



2021.05.21

국회예산정책처 | 사업평가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

Analysis on the Reshoring Policy

손동희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

총괄 | 송병철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작성 | 손동희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

지원 | 이채원 경제산업사업평가과 행정실무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 02) 6788-3777 | eie@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

2021. 5.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21. 4. 22.)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국내 투자 및 고용 활성화, 공급망 안정화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한 법령 제·개정 및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복귀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및 다양한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내복귀 성과는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본격 시행된 2014년 이래로 2020년까지 국내복귀기업은 80여개 수준에 불과하였고, 동반복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이점이 존재하는 대기업의 국내복귀는 1개에 그치고 있어, 대기업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복귀 및 지원현황, 실태조사 결과, 국내외 관련 사례 분석 등 통해 국내복귀 성과의 실질적인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분야 및 방향성에 대하여 고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복귀 성과관리를 위한 목표설정 및 향후 추진방향, 제도적 요인에 따라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로 국내복귀하는 실정을 감안한 지자체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본격시행된 2014년 이래로 국내복귀기업 관계 법령 및 정책 등 제도적 측면, 정책의 집행 및 성과 등 관련 주요 현황 및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향후 국내복귀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는 담당 분석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5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임 의 상

요 약 / 1

I. 서 론 / 1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1
2. 분석의 대상 및 범위	4

II. 국내복귀기업 주요 현황 / 7

1.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7
가. 주요 정책 연혁	7
나. 주요 지원방향	11
(1)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준 및 절차	11
(2) 세제 지원	13
(3) 보조금 지원	16
(4) 기타 주요 지원	18
2.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현황 및 실태	19
가. 국내복귀기업 주요 현황	19
나. 국내복귀기업 주요 지원 현황	23
(1) 법인세 및 관세 감면 현황	23
(2) 투자보조금 및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현황	24
다. 국내복귀 관련 주요 실태	25
(1) 개요	25
(2) 산업통상자원부 실태조사	26



(3)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28
(4) 대한상공회의소 실태조사	29
라. 국내복귀기업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주요 정책 분석 방향	30

III. 주요 정책 분석 / 33

1. 대기업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방향 검토 필요	33
2. 국내복귀 확대를 위한 첨단산업화·고부가가치화 지원 강화 필요	41
가. 개요	41
나.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첨단산업화·고부가가치화 지원 필요성	42
다. 첨단산업화·고부가가치화 지원과 국내복귀 정책 간 연계 강화 필요	46
3. 국내복귀기업 인정요건 완화 필요	50
4. 국내복귀기업 성과관리 강화 필요	56
가. 국내복귀기업 투자 및 고용계획 현황	56
(1) 국내복귀기업 투자계획	56
(2) 국내복귀기업 고용계획	57
나. 국내복귀정책의 명확한 성과목표 설정·관리 필요	58
5. 국내복귀정책에서의 지자체 역할 강화 필요	62

IV. 결론 및 시사점 / 66

부록.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 71

요 약

I. 서 론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 국내복귀¹⁾는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발전 시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 미국·유럽 등 해외주요국의 경우에도, 2008~2009년 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한 제조업 강화를 자국 산업기반·투자 확대 및 고용창출 수단으로서 국내 복귀(리쇼어링, reshoring) 관련 정책을 활발히 진행하기 시작²⁾
- 우리나라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정책은 2013년 8월 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따라 본격 시행되었으며 다양한 후속대책이 발표됨
 - 국내복귀 관련 주요 정책: 「100대 국정과제(‘17.8.)」,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18.11.)」,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6.)」, 「2021년 경제정책방향(‘20.12.)」 등
-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의 제·개정을 통해 국내복귀기업³⁾ 정책의 법적 토대가 구축

1) “국내복귀”(리쇼어링, 유턴)란 넓은 의미에서 해외로 진출한 기업(해외진출기업, offshoring 기업)이 자국으로 복귀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기업의 국내복귀와 관련하여 리쇼어링(reshoring), 유턴(u-turn)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국가별로 국내복귀의 범위 등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법적 용어인 ‘국내복귀’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다만,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과 같이 고유 정책명 등에 ‘유턴(기업)’ 혹은 ‘리쇼어링(기업)’이 활용될 경우에 한해서는 기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2018.12를 바탕으로 재작성하였다.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2019.12.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진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일 것

나. 기업 자신 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정보통신업 및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업을 하고 있을 것

2. "사업장"이란 제1호나목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루어

되었고 지속적인 정책발표가 이루어져 왔으나, 국내복귀 성과는 높지 못한 실정

-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연평균 국내복귀기업수(12개)는 해외진출기업 신규법인수 연평균(3,201개)에 비해 낮은 수준

□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현황 및 실태를 점검·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복귀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4)

2. 분석의 대상 및 범위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의 구성과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분석 내용
Ⅰ. 개요		• 분석의 배경 및 목적 • 분석의 대상 및 범위
Ⅱ. 국내복귀기업 주요 현황		•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및 현황 • 국내복귀기업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주요 정책 분석 방향 검토
Ⅲ. 주요 정책 분석	1. 대기업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방향 검토 필요	• 대기업 복귀 시 동반복귀 사례 및 관련 투자계획 분석 • 우리나라 대기업 지원정책과 해외유사사례 간 비교 검토
	2. 첨단산업화·고부가가치화 지원 강화 필요	• 실태조사 및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첨단산업화·고부가가치화 지원 강화 필요성 검토 • 첨단산업화·고부가가치화 지원과 유관 정책 간 연계 강화 필요성 검토
	3. 국내복귀인정요건 완화 필요	• 국내복귀기업 인정기준 및 복귀 기업 현황 검토 • 해외유사사례 및 추진방향 점검
	4. 국내복귀정책 성과 관리 강화 필요	• 국내복귀기업 투자계획 및 고용계획 분석 • 국내복귀정책의 성과목표 설정 및 관리방안 검토
	5. 지자체 역할 강화 필요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상의 주력산업과 지역별 국내복귀산업 비교 • 국내복귀기업 선정 등 주요 절차에서의 지자체 역할 검토
Ⅳ. 시사점		• 국내복귀정책 개선방향 검토

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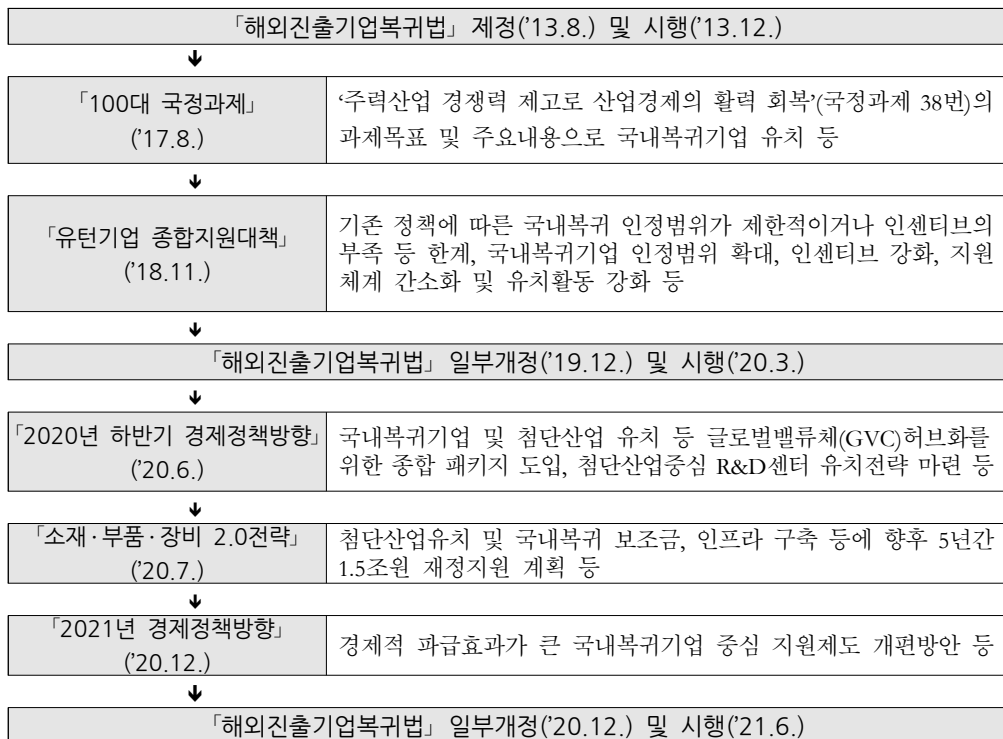
3. "국내복귀"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4.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 가.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 나.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 4) 한편,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계량적인 분석에 한계가 존재함을 고려하여, 법·제도 분석, 복귀 및 지원 현황 분석, 실태조사 등 상대적으로 정성적인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시사점을 고찰하였으며, 가용한 범위 내에서 정량자료를 병행하여 제시함으로써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II. 국내복귀기업 주요 현황

1.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가. 주요 정책 연혁

- 우리나라의 국내복귀기업 대상 정책은 2013년 8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및 시행('13.12.)을 통해 본격화
- 이후 국내복귀 인정범위,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국내복귀 성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18.11.) 발표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약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6.), 「소재·부품·장비 2.0전략」('20.7.), 「2021년 경제정책방향」('20.12.) 등에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포함
- 국내복귀정책은 국내복귀 인정범위 확대 및 요건 완화, 세제 감면 및 보조금 지급 확대, 입지·인력 지원 강화 등과 같이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로 이행 경향



나. 주요 지원 방향

□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준 및 절차

-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준: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25% 이상 등),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⁵⁾,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3단위) 동일성 등
- 국내복귀기업의 주요 선정절차는 신청·접수 → 검토·심사 → 심사보고 → 선정확인서 발급으로 이루어지며,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에서 담당

□ 세제 지원

- 세제 지원은 크게 법인세 및 관세 감면으로 구성
 - －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지원대상 기업규모 및 지역 등의 측면에서 세제 지원을 위한 요건이 완화되는 추세
- 국내복귀기업의 법인세 및 관세 감면 기준·내용
 - － (법인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 복귀하는 대·중견·중소기업에 대하여 국내투자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최대 7년간 50~100%의 감면 가능
 - － (관세) 대·중견·중소기업에 대하여 신규 또는 중고 자본재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에 대하여 50~100% 감면 가능

□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지원은 크게 입지·설비·이전 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으로 구성
 - － 지원대상지역, 상시고용인원 요건, 이전 지원 등의 측면에서 보조금 지급 요건이 완화되는 경향
- 국내복귀기업의 입지·설비·이전보조금 지급 규모 및 기준
 - － (입지·설비보조금) 사업장당 300억원(기업당 600억원) 이내. 수도권은 첨단 산업만 지급 대상으로 한정하며, 사업장당 150억원(기업당 300억원) 이내
 - － (이전보조금) 기업당 4억원 이내에서 운송비용·해체 및 재설치·보험료·수수료 등 해외사업장 이전 소요비용에 대하여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 가능

5) 2021년 6월 23일부터 방역·면역 관련 산업이 포함될 예정이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 '20.12.22. 일부개정 및 '21.6.23.시행 기준)

- 고용창출장려금
 - 사업자가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경우, 사업자가 신규고용인원에 지급한 인건비의 80% 한도로 2년간 100명까지 지급 가능
 - 대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선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연간 지급총액 한도 등을 차등하여 지급 가능
- 기타 주요 지원
 - 세제 지원 및 보조금 지원 이외에도, 현재 외국인고용(E-7 및 E-9 비자)⁶⁾, 구조조정전선티, 스마트공장, 입지, 금융, 지식재산권, 보증·보험우대, R&D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2.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현황 및 실태

가. 국내복귀기업 주요 현황

-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국내복귀기업은 84개였으며,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진출국별로는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
 - 국내복귀기업 현황('14~'20.9.): 84개⁷⁾ (선정 93개 / 폐업 7개 / 철회 2개)
 - 기업규모별 구성: 중소기업 72개(85.7%) / 중견기업 11개(13.1%) / 대기업 1개(1.2%)
 - 기존 진출국 구성: 중국 71개(84.5%) / 베트남 8개(9.5%) 등
-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의 주요 업종은 전자·주얼리·자동차 등이었으며, 주요 복귀지역은 전북·부산·경기·경북 등임
 - 업종 구성: 전자 업종(20.2%)이 가장 높은 비중. 주얼리(15.5%), 자동차(14.3%), 금속·신발(각 9.5%), 기계(8.3%) 화학(7.1%), 섬유(6.0%) 순

6) E-7 비자(특정활동)는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사증 종류를 지칭한다. E-9 비자(비전문취업)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사증 종류를 의미한다.

7) 한편, 2014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 및 일부개정과 함께 「유턴기업 종합지원 대책」 등과 같은 다양한 대책의 추가적인 발표를 통해 국내복귀 관련 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국내복귀기업의 연간 복귀성과의 경우에는 양적으로 미진한 가운데 등락을 반복하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였다.

- 지역별 구성 : 전북이 21.4%로 가장 높은 비중. 부산 15.5%, 경북 13.1%, 경기 11.9% 순
- 입주형태별 구성 : 산업단지 86.9%, 일반 13.1%

[국내복귀정책 시행 이후 주요 복귀 현황]

전체 현황	최다 국내복귀 기업규모	기존 최다 진출국
84개	중소기업 72개 (85.7%)	중국 71개 (84.5%)
국내복귀 최다 업종	최다 복귀지역	입주형태
전자 업종 (20.2%)	전북 (21.4%)	산업단지 입주 (86.9%)

나. 국내복귀기업 주요 지원 현황

□ 법인세 및 관세 감면 현황

- 법인세 감면 건수 및 감면액 규모('15~'18) : 15건 / 15억원
- 관세 감면 건수 및 감면액 규모('14~'19) : 28건 / 3억원

□ 투자보조금 및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현황

- 투자보조금 지원 건수 및 지원액 규모('14~'19) : 10건 / 214억 3,100만원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건수 및 지원액 규모('15~'19) : 17건 / 31억 1,000만원

다. 국내복귀 관련 주요 실태

- ### □ 산업통상자원부('17.9. 및 '20.3.), 중소기업중앙회('20.6.), 대한상공회의소('20.6.) 실태조사 주요 결과 종합

[국내복귀 주요 고려 / 미고려요인 및 정책수요 종합]

구분	주요 내용
국내복귀 고려요인	• 내부적(국내) 요인 : 인센티브, 숙련노동 확보 용이, 신산업 성장,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Made in Korea 효과, FTA 활용 등 • 외부적(기존 진출국) 요인 : (코로나19 등에 따른) 공급리스크 발생, 현지 생산 비용 상승, 낮은 생산성, 규제강화 등
국내복귀 미고려요인	• 현지 내수시장 진출, 국내의 높은 생산비용, 협력사로 진출, 노사·환경 등 각종 규제 등
국내복귀를 위한 정책수요	• 세제 감면, 보조금 지원, 금융지원, 고용지원, 노동·입지·환경 등 규제완화, 기술경쟁력 강화지원, 자동화설비 지원, 수도권 지원 강화, 이전비용 지원, 선정요건 완화 등

주: '주요 내용'에 포함된 각각의 요인 및 정책수요의 경우 실태조사별로 응답비중이 상이할 수 있어, 개별 요인 및 정책수요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응답비중은 개별 실태조사에서 제시

라. 국내복귀기업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주요 정책 분석 방향

- 국내복귀기업 중 대기업이 1개에 불과하나 동반복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이는 대기업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필요성 검토
 - 대기업 복귀비중은 동기간 전체 국내복귀기업(84개) 대비 1.2%(1개)에 불과
 - 반면, 1개 대기업 복귀시 5개 기업이 동반복귀하는 등 대기업 국내복귀 확대의 긍정적 영향을 감안하 때, 대기업 국내복귀 활성화 정책 필요성 검토
- 국내복귀 고려/미고려 요인, 정책수요 등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분석하여, 국내복귀 주력 대상 분석 등 국내복귀 정책의 추진 방향성 검토
 - 현지시장진출, 저임활용 등의 목적으로 해외로 진출한 경우가 90%를 상회⁸⁾하나, 이들 요인으로 해외에 진출한 경우 국내복귀 유인이 크지 않을 가능성
 - 이에, 실태조사,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실질적 국내복귀 성과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향에 대한 검토 필요
-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복귀기업 인정요건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국내복귀를 위한 진입장벽 완화 필요성 검토
 - 연평균 국내복귀기업수('14~'20.9.): 12개 (같은 기간 동안 대기업은 1개)
 - 해외 주요국들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급망 다각화 등을 위한 자국복귀 강화를 천명한 상황에서 국내복귀 인정 및 지원요건에 대한 점검 필요
- 국내복귀를 통한 투자 및 고용계획을 살펴보고, 동 계획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관리체계 등에 대하여 검토
 - 2020년 9월 현재 국내로 복귀한 84개 기업의 투자계획은 1조원을 상회, 고용계획은 3천여명 이상 수준
- 대부분의 국내복귀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현황을 감안하여, 기존의 지자체 발전전략과의 연계성과 국내복귀에서의 지자체 역할 강화 필요성 검토
 - 비수도권 복귀기업 비중: 88.1% (74개)
 - 국내복귀기업 선정절차 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KOTRA가 주요 주체. 지자체는 선정절차 상에서의 역할이 부각되지 않는 실정

8)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주요 해외진출목적은 현지시장진출(68.4%), 수출촉진(10.4%), 제3국진출(6.4%), 저임활용(5.7%), 선진기술도입(2.1%), 자원개발(1.0%), 보호무역타개(0.2%)으로 조사되었다. (목적미분류 5.9% 제외.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제작성)

Ⅲ. 주요 정책 분석

1. 대기업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방향 검토 필요

□ 국내복귀기업 중 대기업은 1개에 불과하나 동반복귀 측면에서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강점이 존재하므로, 실질적인 국내복귀성과 확대를 위해 대기업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방향 검토 필요

- 국내복귀 시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의 투자금액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부가가치 확대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
 - 해외진출기업 신규법인수 측면에서 대기업은 8.7%로 중소기업의 1/7 수준
↔ 평균 투자금액 비중은 72.5%로 중소기업 대비 2.9배 규모('17~'19)
 - 제조업의 사업체수 대비 부가가치액 측면에서도, 대기업의 사업체수 비중은 전체 제조업의 1.0% 수준 ↔ 부가가치액 비중은 50.8% 규모('13~'17)
 - ※ 저위기술산업 대비 고위기술산업에서 부가가치액 비중 확대 경향
- 대기업 복귀에 따른 이점과 국내복귀기업 관련 지원요건 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내복귀 대기업은 1개에 불과('14~'20.9.)
- 반면, 대기업 국내복귀를 통해 동반복귀 효과가 유발됨
 - 대기업 및 동반복귀기업 수: 총 6개 기업(대기업 1개 및 5개 자동차 부품기업). 전체 국내복귀기업 수 대비 약 1/10 가량(7.1%) 차지
 - 대기업 및 동반복귀기업 투자계획: 3,640억원(6개 기업의 투자계획규모가 전체 84개 국내복귀기업 투자계획인 1조 2,477억원의 1/3(29.2%)에 해당하는 규모)

[대기업 동반복귀기업 비중(2019년 현대모비스 사례 기준)]

구분		(단위: 개, 억원, %) 기업수
전체	국내복귀기업 수 (A)	84
	대기업 복귀기업 수 (B)	1
	대기업 동반복귀기업 수 (C)	5
	대기업 및 동반복귀기업 비중 (D=(B+C)/A)	7.1
전체	국내복귀기업 투자계획 규모 (E)	12,477
	대기업 및 동반복귀기업 투자계획 규모 (F)	3,640
	대기업 및 동반복귀기업 투자계획 비중 (G=F/E)	29.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및 청와대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부품기업 국내복귀 투자양해각서 체결식(2019.8.28.)」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 기업들의 해외진출목적과 국내복귀 미고려 요인 중 관계사 동반 진출, 원청기업의 협력사로 진출 및 완성품 업체와 동반진출과 같은 응답이 존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대기업의 국내복귀로 인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임
 - 산업통상자원부 실태조사: 한국으로 복귀 및 신·증설 미고려 사유 중 13.4%가 ‘우리나라 원청기업의 협력사로 진출’(17.9.) / 해외진출목적 중 10.0%가 ‘관계사 동반 진출’(20.3.)
 -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요인 중 15.0%가 ‘국내 원청기업의 협력사로 진출’(20.6.)
- 기업규모별 국내복귀의향 및 국내복귀 시 주요 투자부문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대기업 대상 지원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에서 고려할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국내복귀정책이 수립·시행
 - 대기업의 경우, 투자보조금 중 입지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E-9비자(비전문취업)외국인근로자 관련, 구조조정컨설팅, 스마트공장, 금융 및 지식재산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⁹⁾
 - 다만, 대기업 관련 국내복귀정책 검토 시에 중소·중견기업 지원과의 공정성 측면 등에서 특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중소·중견기업 지원과의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동반복귀 및 투자·고용(계획) 규모 및 실제 달성가능성,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동반복귀에 따른 지원혜택을 조율하는 등 국내복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세밀한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9) 일본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 추경과정에서 2.5조원 규모의 국내복귀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지원유형에 따른 지원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예를 들어,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및 이를 최대한 활용하지 않는 기술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총 소요금액 대비’ 지원비율은 대기업 1/2 이내, 중소기업 2/3 이내로 발표된 바 있다.

한편, 일본의 국내투자촉진보조금은 일본의 공급망 위험 품목의 국내투자 촉진에 중점을 둔 지원정책으로, 우리나라의 국내복귀정책이 국내복귀기업만을 지원하는 것과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 국내복귀 확대를 위한 첨단산업화·고부가가치화 지원 강화 필요

가.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첨단산업화·고부가가치화 지원 필요

- ‘현지 내수시장 진출’, ‘생산비용 절감’, ‘협력사로 해외진출’ 등의 경우에는 국내 복귀 유인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가능성¹⁰⁾
 - ‘현지 내수시장 진출’ 목적 해외 진출 → 국내복귀 시에도 해외시장 판로 유지 및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확보 노력 지속 필요 → 국내복귀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
 - 생산비용 절감 목적 해외 진출 → 국내복귀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
 - － 법정 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우리나라(1,590)가 베트남(504)과 중국(513)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2018년 기준, USD)
 - －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 기준으로, 한국(1.8)에 비해 중국(6.5)과 베트남(5.6)이 3배 이상 높은 수준(2015~2017년간 증가율 기준, %)
 - － 법정 월 최저임금액,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감안할 때, 베트남으로의 이전을 선택하는 기업이 한국 이전 기업에 비해 많을 것으로 보임
 - ※ 중국으로부터의 이전 고려 기업들의 이전 대상 지역으로는 ‘동남아시아’라는 응답이 69.8%, ‘한국’이라는 응답이 24.5%로 약 2.8배 높게 나타난 실태조사 결과 존재¹¹⁾
 - 협력사로 해외진출한 경우 → 협력관계 기업이 동반복귀하지 않는 이상 국내복귀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실정
- 반면, ‘숙련노동 확보’, ‘Made in Korea 효과’, ‘신산업 성장’,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등과 같은 국내복귀 고려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첨단산업화·고부가가치화¹²⁾ 지원 강화’가 국내복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0) 현지시장진출, 생산비용절감 목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복귀 유인이 현 시점에서 낮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해당 목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경우 반드시 국내복귀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향후 국가간 웹기반 상거래 활성화, AI 및 로봇·자동화 발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상기 목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복귀 가능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11) 산업연구원, 「중국진출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 보고서(2020년)」, 2021.2.

12) 이하에서는 ‘Made in Korea 효과’, ‘신산업 성장’,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고부가가치화로 보았다.

- 특히, ‘산업 패러다임 변화 시점(투자전환기)’에서의 첨단산업화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강화는 국내복귀 성과 확대에 대한 기여도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첨단산업화·고부가가치화 지원과 국내복귀 정책 간 연계 강화 필요

□ 국내복귀와 첨단산업화·고부가가치화로의 산업 패러다임 변화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국내복귀 지원정책과 첨단산업화·고부가가치화 지원정책 간에 밀접한 연계가 이루어질 필요

- 우리나라의 대기업 국내복귀는 첨단산업·고부가가치화로의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기인. 일본의 경우에도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국내복귀 사례 존재
 - 우리나라 대기업 국내복귀사례인 현대모비스의 경우,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로의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 대응을 위해 국내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짐

일본의 토요타, 혼다, 닛산 등 자동차 대기업의 경우에도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차세대 자동차 개발을 위한 숙련노동, 연구개발, 소재·부품 회사와의 협력 필요성에 따라 자국복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짐

- 국내복귀 촉진을 위해서는 신산업 성장을 통한 첨단산업화·고부가가치화 지원 강화 필요
 - 우리나라의 해외진출기업의 주요 국내복귀 고려요인: 숙련노동, 신산업 성장,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기술경쟁력·자동화설비 지원 등과 같이 첨단산업화·고부가가치화 관련 응답 존재
- 첨단산업화·고부가가치화 지원 강화는 단일 정책만으로 한계가 존재하므로, 국내복귀정책과 관련 대책 간의 연계를 통해 기업복귀 성과의 향상을 도모할 필요
 - 「산업기술혁신계획」 등 산업기술 관련 정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등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관련 정책, 「지역산업진흥계획」 등 지자체의 산업발전 관련 정책과의 밀접한 연계 필요

-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국내복귀의향기업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첨단산업화 지원, 지자체 산업발전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수집·전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

3. 국내복귀기업 인정요건 완화 필요

- 현행 국내복귀요건을 해외유사사례를 감안하여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해외사업장 축소보다는 국내투자 및 고용확대에 보다 초점을 맞추도록 개편하여, 국내 복귀에 따른 파급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
 - 해외생산 청산·양도·축소와 같은 현행법 상의 국내복귀기업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국내복귀 진입장벽을 낮추고 국내투자·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축소 요건 등 국내복귀 인정기준을 엄밀하게 설정하여 국내복귀지원을 위한 예산지원과 조세감면이 보다 투명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볼 수 있으나,
 -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국내복귀기업수는 84개, 이 중 대기업은 1개에 불과한 등 성과가 제한적인 상황. 세제 및 보조금 지원실적 규모도 크지 않은 실정
 -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해외공급망을 활용한 기존의 생산·조달체계 상의 안정성이 약화되면서, 해외 각국에서는 자국우선주의 측면에서 국내 복귀 강화를 천명하고 있는 상황
 - 해외 주요국의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등의 요건이 없거나 해외투자계획 취소 등도 국내복귀로 인정하는 등 국내복귀를 우리나라에 비해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국내복귀 인정기준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유사 사례]

국가	국내복귀 인정기준
한국	□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증설
미국	□ 해외-국내사업장 간 생산량 조정(전환), 해외 OEM이나 수입품의 기능을 대체하는 새로운 상품 생산, 해외투자계획의 취소 및 국내투자로의 전환 등을 모두 국내복귀에 포함
EU	□ EU회원국인 본국으로 이전, 비EU국가에서 EU회원국으로 이전 등
일본	□ 국내투자촉진보조금 지급 관련 해외사업 축소 및 동일제품 생산 등의 요건 없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 국내복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내 투자·고용 확대에 있음을 고려할 때,
 - － ‘실제로 국내에서 새롭게 생산이 이루어지거나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국내복귀’도 정책적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 해외생산 감축량에 비례한 지원보다는 ‘국내에서의 투자 및 고용규모 확대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4. 국내복귀기업 성과관리 강화 필요

가. 국내복귀기업 투자 및 고용계획 현황

- 국내복귀기업의 총 투자계획은 1조 2,477억원 규모
 - 업종별 기업당 투자계획 규모(368.0억원)는 자동차 기업이 가장 높은 수준
 - 기업규모별 기업당 투자계획 규모는 대·중견기업(651.8억원)이 중소기업(64.7억원)의 10배 수준
- 국내복귀기업의 총 고용계획은 3,242명 규모
 - 업종별 총 고용계획 규모는 주얼리 기업(554명)이 가장 많았으며, 기업당 고용계획 규모는 기계 기업(63명)이 가장 높은 수준
 - 기업규모별 기업당 고용계획 규모는 대·중견기업(38명)과 중소기업(39명)이 유사한 수준

[국내복귀기업의 업종별 총 투자·고용계획]

(단위: 억원, 명)

자동차		금속		기계		화학		전자	
투자계획	고용계획	투자계획	고용계획	투자계획	고용계획	투자계획	고용계획	투자계획	고용계획
4,416	376	2,073	301	1,189	440	1,895	174	1,034	551
신발		주얼리		섬유		기타		합계	
투자계획	고용계획	투자계획	고용계획	투자계획	고용계획	투자계획	고용계획	투자계획	고용계획
500	425	365	554	256	223	749	198	12,477	3,242

주: 각 산업별·기업별 투자계획 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나. 국내복귀정책의 명확한 성과목표 설정 필요

-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 이래로 국내복귀 관련 주요 정책에서 명확한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국내복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내투자 및 고용의 양적·질적 향상을 중심으로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할 필요¹³⁾
 - 2013년 12월부터 2020년 12월 현재까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목표를 제시한 정책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19.12.) 1개임
 - － 국내복귀기업 누적 90개 이상 창출 목표 → 2014~2019년까지 국내복귀 기업은 64개 → 2020년 단일연도 목표를 20여개 수준으로 설정할 경우 누적 90개 달성가능 → 사실상 2020년 단일연도 목표 제시
 - － 또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투자·고용계획에 대한 성과목표 및 관리방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음
 -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국내복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내 투자 및 고용의 양적·질적 향상 중심으로 성과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동 목표에 따라 관련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
 - － 지속적·체계적·일관적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구조와 문항을 개발하고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를 통해 자료를 축적할 필요

13) 한편, 국내복귀기업 수를 성과목표로 설정할 경우 한계기업 유입의 소지로 인해 실질적인 투자 및 고용 확대에 역행할 우려도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국내복귀기업 대상 실태조사 시 포함 필요사항 및 의무화 고려사항(안)

- [실태조사 포함 필요사항]
해외진출기업의 주요 업종·규모 등 고용 특성, 해외진출요인, 국내복귀 및 미복귀 의향·사유, 정책수요 및 건의사항, 신청 후 미선정 및 지원배제 사유, 폐업·철회사유, 투자·고용계획 달성 여부, 한계기업 대상 여부 등
- [실태조사 시 정보제공 의무화 고려]
국내복귀기업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 조세감면, 입지지원 등 다양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음 → (정보공개 시 경영상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태조사 시 관련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등

-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통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관련 통계를 DB화하여 실태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 중장기적 자료 축적 시 비용편익분석 등 증거기반 정책개발·개선의 기초자료로 기능 →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피드백 제공, 시사점 발굴 등에 유용하게 활용 가능
 - ⇒ 해외진출기업 대상 맞춤형 국내복귀 프로그램 제공¹⁴⁾, 지자체의 국내복귀 관련 정보접근성 확대, 국내복귀정책 성과관리¹⁵⁾ 등에 적용 가능

5. 국내복귀정책에서의 지자체 역할 강화 필요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서의 지역별 주력산업과 국내복귀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국내복귀기업 선정과정에서의 지자체 역할을 확대할 필요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재원투입 계획규모와 주력산업 선정방향을 감안할 때, 국내복귀정책과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연계시 시너지효과 창출 가능
 - 계획기간별 재원투입 계획규모: 제1차('04~'08) 132조원 → 제2차('09~'13) 161조원 → 제3차('14~'18) 165조원 → 제4차('18~'22) 175+ α 조원¹⁶⁾

14) 대만의 경우, 대만 전기전자협회, 대만 경제부 투자사무처 등에서 해외진출 자국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다수 실시하여 맞춤형 지원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으며, 이는 대만의 주요 국내복귀 성과창출 요인으로 설명하는 사례도 있다.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리쇼어링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2018.12.)

15) 한편, 고용 확대의 경우에는 국내복귀정책 중 하나인 스마트공장 지원 등 시설고도화 지원과 상충될 여지가 있다. 이에, 양적인 고용 확대 방안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공급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 시·도별 주력산업¹⁷⁾은 지역산업기반, 성장가능성 및 고용창출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
- 지자체가 국내복귀기업 선정·지원과정, 국내복귀정책과 지자체 발전정책 간 연계 등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적 개선과 역할 확대 필요
 - 법령 및 제도적인 요인으로 인해 국내복귀가 사실상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집중되는 상황이나, 산업통상자원부, KOTRA 중심으로 국내복귀기업 선정 → 지자체가 선정과정에서 주체적·적극적으로 역할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 지자체 대상 국내복귀 관련 조사에서 지역특수성 고려, 국내복귀기업 관련 현황 및 투자정보 확대 관련 응답 존재 → 지자체가 국내복귀기업 선정·지원 등 정책 전반에서 입지가 확고하지 못한 상태
 - 2021년 6월 23일 시행예정인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 시 지자체장과 협의토록 규정¹⁸⁾ → 참여범위, 협의방식, 절차 등 체계적인 이행방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실정 → 절차적 개선과 역할 확대를 통해 지자체의 기능 확장을 도모할 필요
 - 이를 기반으로, 궁극적으로는 지자체의 재량권 확대를 통해 자체적인 국내복귀기업 유치역량 강화로의 점진적인 이행을 달성할 필요

16) 2018년은 제3차 계획기간과 제4차 계획기간이 중첩되는 기간으로, 제3차 계획기간에서의 2018년 재원투입계획은 32.1조원이었으며, 제4차 계획기간에서의 2018년 재원투입계획은 26.9조원으로 차이가 존재하였다.

17) 지역별 주력산업은 본문 63쪽에서 표로 자세히 수록하였다.

18) 2021년 6월 23일 시행예정(2020.12.10.일부개정)인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IV. 결론 및 시사점

- 우리나라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정책은 2013년 8월 제정된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근거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이 발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복귀 실적은 높지 않음
-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현황 및 우려사항 분석을 통해, 국내복귀기업 관련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제시
 - 첫째, 국내복귀기업 중 대기업은 1개에 불과하나 동반복귀 측면에서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강점이 존재하므로, 실질적인 국내복귀성과 확대를 위해 대기업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방향 검토 필요
 - － 2019년 대기업 1개 복귀 시, 5개 기업의 동반복귀 사례 존재
 - － 해외진출 시 원청업체의 협력사로 진출하여 단독 국내복귀는 어려운 실정
 - － 국내복귀기업 투자·고용계획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대기업 국내복귀의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 다만, 대기업 관련 국내복귀정책 검토 시에 중소·중견기업 지원과의 공정성 측면 등에서 특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중소·중견기업 지원과의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동반복귀 및 투자·고용(계획) 규모 및 달성가능성,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동반복귀에 따른 지원혜택을 조율하는 등 세밀한 대책 필요
 - 둘째, 국내복귀와 첨단산업·고부가가치화로의 산업 패러다임 변화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국내복귀 지원정책과 첨단산업화·고부가가치화 정책 간에 밀접한 연계 필요
 - － 현지시장진출, 생산비용 감소, 협력사와 동반진출 등을 목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 국내복귀유인이 높지 않을 수 있음
 - － 한국·일본의 자동차기업의 차세대 자동차로의 패러다임 전환(투자전환기)에 따른 자국복귀 사례 및 ‘숙련노동, 신산업성장, 생산성향상 등’ 첨단산업화·고부가가치화 지원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감안할 때, 국내복귀 촉진에 첨단산업화·고부가가치화 지원 중요

- 정부의 산업기술·중소기업기술 관련 정책, 지자체의 산업발전 관련 정책 등과의 연계방안 마련 필요.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통한 유관 정책 관련 추가정보 수집·전달기능 강화 등 검토 필요
- **셋째**, 현행 국내복귀요건을 해외유사사례를 감안하여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해외사업장 축소보다는 국내투자 및 고용확대에 보다 초점을 맞추도록 개편하여, 국내복귀에 따른 파급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
 -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축소 요건 등 국내복귀 인정기준을 엄밀하게 설정하여 국내복귀지원을 위한 예산지원과 조세감면이 보다 투명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볼 수 있으나,
 -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 이후 7년여간 국내복귀기업이 84개로 성과가 한정적이며, 코로나19로 인해 미국·EU·일본 등 주요국들이 국내복귀 강화를 천명하고 있는 상황
 - 해외 주요국의 경우 국내복귀기업 인정요건으로 해외사업장 축소기준을 포함하지 않거나, 해외투자계획 취소 및 국내투자로의 전환 등도 국내복귀로 인정하는 등 우리나라에 비해 국내복귀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
 - 국내복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내 투자·고용 확대임을 고려할 때, ‘실제로 국내에서 새롭게 생산이 이루어지거나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국내복귀를 인정’, 해외사업장 축소보다는 ‘국내에서의 투자 및 고용규모 확대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
- **넷째**, 국내복귀정책 수립·시행 시 국내복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내투자 및 고용의 양적·질적 향상을 중심으로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할 필요
 -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시행된 이후 국내복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발표되었으나 명확한 성과목표가 설정되지 않아, 국내복귀정책의 성과 확인이 어려운 상황
 -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국내복귀기업 84개의 투자계획은 1조원을 상회, 고용계획은 3천여명에 이르므로, 이에 대한 성과관리 필요
 - 종합적·지속적·일관적 실태조사를 위한 실태조사 구조·문항 개발, 국내복귀기업 대상 전수조사 수준 실태조사를 통한 자료축적 필요

→ 국내복귀기업 관련 통계의 DB화 필요

- 다섯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서의 지역별 주력산업과 국내복귀기업 입지 간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 이를 위해 국내복귀기업 선정과정에서의 지자체 역할 확대 필요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서는 시·도별 주력산업 등을 선정하여 왔으나, 동 5개년계획에서의 주력산업과 국내복귀기업 입지 간에 강한 연계경향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계획기간별로 10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법정계획 → 지역별 주력산업과 국내복귀기업 간의 연계율을 향상시킬 경우 시너지효과 창출 가능 → 한편, 국내복귀기업 선정절차 상 주요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임 → 지자체가 국내복귀기업 선정과정부터 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개선과 역할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이행할 필요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국내복귀정책은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방안(’12.4.)」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13년 8월에 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기초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왔다.¹⁾²⁾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촉진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³⁾ 이는, 국내복귀를 통해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시키는데 국내복귀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유럽 등 해외주요국의 경우에도, 2008~2009년 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한 제조업 강화를 자국 산업기반·투자 확대 및 고용창출 수단으로서 국내복귀(리쇼어링, reshoring)⁴⁾ 관련 정책을 활발히 진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의 제·개정을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국내복귀 및 정착 촉진을 통

1)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2019년 12월 10일 일부개정되어,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중이다. 이후 2020년 12월 22일 일부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6월 23일 시행예정이다.

2) 2019년 12월 일부개정 이전까지는, 2013년 8월 제정(2013년 12월 시행)된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국내복귀를 보다 협의로 정의한 바 있다. 당시, “국내복귀”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동법 일부개정을 통해,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으로 정의를 확대한 바 있다.

3)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국내복귀”(리쇼어링, 유턴)란 넓은 의미에서 해외로 진출한 기업(해외진출기업, offshoring 기업)이 자국으로 복귀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기업의 국내복귀와 관련하여 리쇼어링(reshoring), 유턴(u-turn)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국가별로 국내복귀의 범위 등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법적 용어인 ‘국내복귀’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다만,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과 같이 고유 정책명 등에 ‘유턴(기업)’ 혹은 ‘리쇼어링(기업)’이 활용될 경우에 한해서는 기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2018.12를 바탕으로 재작성하였다.

한 국내복귀 성과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의 제정·시행을 통해 법적 기반이 갖추어졌으나, 이후 5년간 국내복귀 선정기업 수가 51개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정책성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⁶⁾ 이에 따라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2017.7.)에 유턴기업 유치를 포함하였고, 2018년 11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내복귀기업 지원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후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약화가 초래되면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6.)」, 「소재·부품·장비 2.0전략(‘20.7.)」, 「2021년 경제정책방향(‘20.12.)」 등에서 주요 전략 중 하나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의 제·개정을 통해 국내복귀기업⁷⁾ 정책의 법적 토대가 구축되었으며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이 발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직접투자에 비해 국내복귀 실적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6) 관계부처 합동,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2018.11.29.

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2019.12.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진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일 것

나. 기업 자신 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정보통신업 및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하고 있을 것

2. "사업장"이란 제1호나목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3. "국내복귀"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4.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가.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나.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통계’를 살펴보면, 해외직접투자⁸⁾를 통해 해외에 설립된 신규법인수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시행된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연평균 3,201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국내복귀기업수는 연평균 12개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두 지표 간의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해외직접투자 신규법인수 대비 국내복귀기업수 비중은 0.4%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⁹⁾

[해외직접투자 신규법인수 및 국내복귀기업수(2014~2020년 9월)]

(단위: 개,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9.	합계	평균
해외직접투자 신규법인수(A)	3,051	3,217	3,345	3,436	3,548	3,953	1,855	22,405	3,201
국내복귀기업수(B)	20	3	12	4	9	16	20	84	12
비중(B/A)	0.7	0.1	0.4	0.1	0.3	0.4	1.1	0.4	0.4

주: 해외직접투자 신규법인수는 2021.2.19. 검색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신규법인수) 및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현황 및 실태를 점검·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복귀기업 관련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8) 「외국환거래법」(2017.1.17. 일부개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9) 2020년의 경우 해외직접투자통계가 2020년 9월까지 가용하므로, 본문에서는 2014년부터 2019년 기준으로 통계를 수록하였다. (2021년 2월 19일 검색 기준으로, 2020년 해외직접투자통계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웹페이지에 2020년 9월말까지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한편,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20.1.20.)하기 이전인 2019년의 해외직접투자 신규법인수는 3,953개이며, 국내복귀기업수는 16개이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해외직접투자 신규법인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5.3%, 국내복귀기업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4.4%이다. (2014~2020.9. 연평균 증가율: 해외직접투자 신규법인수 △8.0%, 국내복귀기업수 0.0%)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복귀기업 관계 법령 및 정책 등 제도적 측면, 정책의 집행 및 성과 등 관련 주요 현황 및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향후 국내복귀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정책이며, 분석범위는 2013년 8월에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제정된 이후 2020년 12월 현재까지 수립된 주요 정책 및 지원 현황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보고서의 구성과 분석내용으로, 먼저 2012년부터 2020년말까지의 주요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현황과 주요 정책별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준 및 절차를 살펴보고, 세제 및 보조금 지원, 기타 주요 지원 등 정책 수단별로 국내복귀기업 대상 주요 지원방향을 수록하였다. 더불어, 기업규모별·진출국별·업종별·지역별 등 국내복귀기업 현황을 정리하고, 세제·보조금 등 국내복귀기업 지원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복귀기업 정책에 대한 주요 분석방향을 검토하고 주요 정책 분석에 반영하였다.

주요 정책 분석에서는, ①대기업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방향 검토 필요성, ②국내복귀 확대를 위한 첨단산업화·고부가가치화 지원 강화 필요성, ③국내복귀기업 인정요건 완화 필요성, ④국내복귀기업 투자고용계획 및 성과관리 필요성, ⑤국내복귀정책에서의 지자체 역할 강화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대기업 국내복귀 활성화 필요성 측면에서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 이후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국내복귀기업 84개 중 대기업은 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개 대기업 복귀 시 5개 기업이 동반복귀하는 사례가 존재하였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해외진출목적 및 국내복귀 미고려 사유로 관계사 동반진출 관련 응답이 존재하였던 바, 대기업의 국내복귀는 국내복귀규모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기업 복귀의 필요성을 관련 현황 및 실태조사 분석, 해외유사사례 검토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국내복귀 확대를 위한 첨단산업화 지원 강화 필요성 측면에서는, 국내복귀 대기업이 친환경차로의 첨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기인하여 국내로 복귀한 상황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 현황 분석, 해외유사사례 검토 등을 통해 국내복귀정책에서 첨단산업화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셋째, 국내복귀기업 인정요건 완화 필요성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내복귀기업 인정·지원요건을 점검하고 해외 주요국과 비교분석하여 국내복귀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지원요건 완화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복귀 지원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넷째, 국내복귀기업 투자고용계획 및 성과관리 필요성 측면에서는, 국내복귀기업의 투자 및 고용계획을 분석하고, 성과목표 설정에 따른 성과관리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이를 토대로,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다섯째, 국내복귀정책에서의 지자체 역할 강화 필요성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국내복귀 지원이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내복귀기업 입지가 비수도권인 상황을 감안하여, 주요 지역발전 계획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서의 주력 산업과 국내복귀기업 입지 간의 비교, 국내복귀기업 선정과정 등에서의 지자체 역할 등을 분석하였다.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산업연구원·KOTRA·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의 기관제출자료, 각종 문헌 및 통계자료, 세미나 및 토론회 자료,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하였다.

한편,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계량적인 분석에 한계가 존재함을 고려하여, 법·제도 분석, 복귀 및 지원 현황 분석, 실태조사 등 상대적으로 정성적인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시사점을 고찰하였으며, 가용한 범위 내에서 정량자료를 병행하여 제시함으로써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의 구성과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분석 내용
I. 개요		☐ 분석의 배경 및 목적 ☐ 분석의 대상 및 범위
II. 국내복귀기업 주요 현황		☐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 주요 정책 연혁 -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유턴기업 종합지원 대책, 2021년 경제정책방향 등 - 주요 지원 방향 - 주요 정책수단(세제 감면, 보조금 지원)별 지원 방향 ☐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현황 및 실태 - 국내복귀기업 주요 현황(기업규모별·진출국별·업종별·지역별 구성) - 국내복귀기업 주요 지원 현황(세제 감면 및 보조금 지원) - 국내복귀 관련 주요 실태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실태조사 결과 등 ☐ 국내복귀기업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주요 분석방향 검토 - 국내복귀기업 현황과 실태조사 결과 등에 기초하여, - 대기업 복귀, 비수도권 이전에 따른 지자체 역할, 첨단산업화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요건 완화, 성과관리 강화 필요성 등
III. 주요 정책 분석	1. 대기업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방향 검토 필요	☐ 대기업 유치활동 강화 필요성 검토 - 대기업 복귀 시 동반복귀 사례 및 관련 투자계획 분석 - 관련 실태조사 결과 분석 - 우리나라 대기업 지원정책과 해외유사사례 간 비교 검토
	2. 첨단산업화·고부가가치화 지원 강화 필요	☐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첨단산업화 지원 필요성 검토 - 국내복귀 고려/미고려 요인 및 정책수요 분석 ☐ 첨단산업화 지원과 국내복귀 정책 간 연계 강화 필요성 검토 - 첨단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자국복귀 국내외 사례 분석 - 관련 실태조사 결과 분석 - 첨단산업화 지원 방향성 검토
	3. 국내복귀 인정요건 완화 필요	☐ 국내복귀 인정요건 완화 방향성 검토 - 실태조사에서의 국내복귀 고려요인 및 정책수요 분석 - 국내복귀기업 인정기준 및 복귀기업 현황 검토 - 해외유사사례 및 추진방향 점검 - 국내복귀기업 인정·지원 정책 방향성 검토
	4. 국내복귀정책 성과관리강화 필요	☐ 국내복귀기업 투자·고용계획 현황 검토 - 국내복귀기업 투자계획 및 고용계획 분석 ☐ 국내복귀정책의 성과목표 설정 및 관리방안 검토 - 국내복귀정책 성과목표 수립 여부 점검 - 국내복귀정책 성과관리 및 제고 방향성 검토
	5. 지자체 역할 강화 필요	☐ 국내복귀정책에서의 지자체 역할 강화 필요성 검토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상의 주력산업과 지역별 국내복귀산업 비교 - 국내복귀기업 선정 등 주요 절차에서의 지자체 역할 검토
IV. 시사점		☐ 국내복귀정책 및 현황 분석을 통한 정책개선 방향성 검토

가. 주요 정책 연혁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정책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13.12.)으로 본격화되었다.¹⁰⁾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전에도 국내복귀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는 존재하였으나,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인센티브가 부족한 등의 한계가 지적된 바 있다.¹¹⁾ 이후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에 즈음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추가대책」(‘13.12.3.)이 발표되었으며, 동 대책에는 조세·보조금 지원확대, 국내정착·기업유치 지원 등과 관련한 조치가 포함되었다.

2015년과 2016년에 발표된 「수출경쟁력 강화대책」(‘15.7.)¹²⁾,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6.6.)¹³⁾에는 세제감면 확대, 입지·인력 등과 같은 국내복귀투자 활성화 대책이 포함되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 중 38번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에서 국내복귀기업 중점 유치 등 관련 지원제도 개편을 2018년까지 진행하고, 2022년까지 국내복귀기업 일자리 1,000개 창출이라는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2018년에는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18.11.)을 통해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인정범위 확대, 인센티브 강화, 지원체계 간소화 및 유치활동 강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발표되면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이어나갔다.

이후, 2019년 12월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의 일부개정(시행 ’20.3.)이 이루어졌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화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0.2.)¹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6.)¹⁵⁾, 「소재·부품·장비 2.0전략」(‘20.7.)¹⁶⁾ 및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 예산안」(‘20.9.1.)¹⁷⁾ 등에서 글로벌밸류체인(GVC)

10)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I.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에 수록되어 있다.

11) 관계부처 합동,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방안」, 2012.4.

허브화 및 첨단산업 기지화 등을 주된 정책목표로 하는 국내복귀기업 정책방향이 제시되었다.

2020년 12월 발표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해외사업장 축소 및 동일제품 생산기준 예외 인정, 첨단산업 및 동반복귀 지원 강화,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입지지원 확대 등의 국내복귀기업 대상 정책방향을 포함하였다. 더불어 2020년 12월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일부개정·공포되면서, 국내복귀기업 대상확대 및 인정요건 완화, 협력형 유턴 지원 강화, 보증제도 수립·운용, 연구개발비용 지원, 시장개척 및 거래처 확보 등을 포함하였으며, 매년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등을 포함하였다.

즉,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13.8.) 이후의 국내복귀 지원정책은 초기에 국내복귀기업 인정범위 확대, 세제 및 보조금 등 인센티브 강화, 지원체계 간소화 등이 추진되었으며 해당 기조가 지속되는 한편, 2020년부터는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스마트화·공정자동화, 연구개발 및 첨단산업 지원 등 첨단산업 분야로의 투자 강화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였다.

종합하면, 국내복귀기업 인정 범위 확대 및 요건 완화, 세제 감면, 보조금 지급 확대 및 신설, 입지·인력 관련 지원 강화 등과 같이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로의 이행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이하에서는 2012년 이후 발표된 주요 국내복귀정책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관련 주요 정책별 내용]

발표연월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관련 주요 정책별 내용
2012. 4.	□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방안」(12.4.26.) • 우리 기업의 유턴 지원 대폭 강화 - 주요 유턴 장애요인인 입지·인력·세제 분야 지원 강화 - 지역균형발전을 고려, 비수도권 복귀기업 한정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에 준하여 지원 - 특정업종/다수기업 ‘집단유턴’ 시, 해당업종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혜택 부여 등
2012. 7.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7.27.~8.27.)」 • 유턴기업 개념 확대, 조세·자금·입지·인력 등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유턴 희망기업 등록제도 도입,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센터 등 추진체계 구축

발표연월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관련 주요 정책별 내용
2013. 12.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3.12.7.) (제정 ‘13.8.6.)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추가대책」(‘13.12.9.) •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13.12.7.)에 따른 유턴기업 정책수요 반영 추가 지원 대책 발표 - 조세·보조금 지원확대: 지방소득세 감면, 고용·입지·설비투자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한도 우대 등 - 국내정착 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시 비용지원, 외국인력 국내기업 배정시 우대, 집단유턴기업 공동R&D센터 지원, 유턴기업 수요맞춤형 부지제공 등 - 기업유치 지원 등: 유턴기업-대기업간 수요 연계, 해외청산지원 컨설팅 서비스 제공
2015. 7.	□ 「수출경쟁력 강화대책」(‘15.7.9.) • 수출역량이 있는 유턴 희망기업의 국내 정착 지원 - 한·중, 한·EU FTA관세효과 활용 등을 위해 제조기업 유턴을 촉진하고, 적극적인 입지지원 등을 통해 수출특화기업으로 본격 육성
2016. 6.	□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6.6.28.) • 중견(유턴)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 국내인력 채용 및 외국인력 고용 지원 등으로 유턴투자 활성화
2017. 8.	□ 100대 국정과제 • (국정과제 38번)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 신산업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유턴기업을 중점 유치하는 방향으로 2018년까지 관련 지원제도 개편 - 2022년까지 외국인투자기업 일자리 5만개, 유턴기업 일자리 1천개(직접고용, 누계) 창출
2018. 11.	□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18.11.29.) • 유턴기업 인정범위 확대: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완화, 대상업종 및 생산제품 범위 확대 • 인센티브 강화: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 강화, 고용보조금 지원 확대, 법인세·관세 감면대상 확대, 농어촌특별세 감면 허용, 입지지원 강화, 정부정책사업 참여 우대 • 지원체계 간소화: 지원절차 및 서류, 신청기한 간소화 • 유턴기업 유치활동 강화: 해외진출기업D/B 구축, 유턴수요 발굴 및 제도 홍보
2019. 12.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9.12.10.)·시행(‘20.3.11.)
2020. 2.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0.2.28.) • 대기업이 협력사의 국내유턴을 지원하는 경우,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사례로 인정 • 국내사업장 증설 시에도 신설과 동일하게 세제 혜택 제공 • 항만 배후단지 입주 허용 추진 • 신속한 화학안전 제도 이행을 위한 밀착형 컨설팅 및 융자금 우선 지원

발표연월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관련 주요 정책별 내용
2020. 6.	□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6.1.) • 유턴·첨단산업 유치 등 GVC 허브화 - 세제, 입지, 보조금, 설비, 금융, R&D, 인력, 컨설팅, 규제 등 유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종합 패키지 도입 - 기준완화, 세제, 보조금, 인센티브 등 첨단산업 중심 R&D 센터 유치 전략 마련 -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유턴 유치단’ 구성, 선제적 유턴수요 발굴 적극 추진 - 소부장기업 유턴기업 인정요건 완화 등
2020. 7.	□ 「소재·부품·장비 2.0전략」(‘20.7.9.) • 첨단산업유치·유턴 소요 보조금과 외국교육기관 유치, 인프라 구축 등에 향후 5년간 1.5조원 재정지원(국비·지방비 포함) - 유턴보조금 신설, 사용용도(입지·설비) 통합, 비수도권 유턴기업 대상 지원비율 및 한도 상향 - 수요기업 협력사 유턴 지원 장려 및 동반성장·공정거래협력 평가 가점 부여 - 공정혁신R&D, 스마트설비 우대금리 적용, 스마트공장 + 로봇 지원한도 확대 - 최소 상시고용요건 및 유턴기업 신청기한 완화, 국내사업장 신증설기한 완화, 지방 외투자지역 내 유턴기업 입주 허용, 신뢰성 보증 도입 등
2020. 9.	□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 예산안」(‘20.9.1.) • 첨단산업 기지화를 목표로 유턴기업·외투기업에 대한 보조금·인력·R&D 등 맞춤형 지원 - 유턴기업 보조금(200(‘20)→500억원(‘21)), 유턴기업 고용창출보조금(11(‘20) → 22억원(‘21))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 유턴기업 원스톱 지원데스크 확대(6→8개소) 등
2020. 12.	□ 「2021년 경제정책방향」(‘20.12.17)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내복귀기업 중심으로 지원제도 개편 - 해외사업장 축소 및 동일제품 생산기준 예외인정, 비수도권 첨단투자 시 국내복귀 보조금 추가지원 - 수도권 외 지역으로 2개 이상 기업 동반 복귀시, 국내복귀기업 인정요건 완화 및 보조금 지원비율 상향 - 전략적 유치 필요성 인정시, 현행 법령 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수준 지원 - 국유지 임대료 추가 감면방안 검토 및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부여 - 스마트화, 공정자동화 등 공정 혁신을 위한 지원 확대(9→11억원) 등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2.22.)·시행(‘21.6.23.) • 대상확대: 국내복귀기업 대상에 방역·면역 산업 추가 • 인정요건 완화: 첨단업종·핵심공급망 품목 대상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면제 • 협력형 유턴 지원근거 신설: 거리적 인접성 요건 삭제, 공동시설 지원 등 • 지원강화: R&D, 시장개척 및 정주여건 개선, 보증 지원 • 사후관리: 매년 실태조사 의무 실시 등

자료: 각 정책을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지원방향

(1)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준 및 절차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2조(정의)에 따른 ‘국내복귀’는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또한, ‘국내복귀기업’이란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및 국내복귀를 진행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을 의미한다.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의 경우, 기존에는 해외사업장 50% 이상 축소¹²⁾에서 25% 이상 축소로 완화되었으며, 연구개발비의 경우에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 규정 등을 신설하여 연구개발센터 등 연구시설 국내복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¹³⁾

1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73호)

제7조(생산량 감소의 기준) 해외사업장을 축소를 통해 국내복귀하려는 기업(국내사업장이 있는 기업에 한한다)은 해외사업장 축소완료일로부터 과거 1년간 생산한 생산량이 해외사업장 축소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간 생산한 생산량의 50% 이하인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해외사업장 축소완료일(해외사업장 축소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해외사업장 축소 개시일)이 속한 년도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11.10.)

제3조(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연구개발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으로 한정한다)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이하 이 항에서 “기준경상연구개발비”라 한다) 규모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목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할 것
 - 가. 기준경상연구개발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로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가 축소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하일 것
 - 나. 기준경상연구개발비가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로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가 축소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 다. 기준경상연구개발비가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인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로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가 축소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의 85퍼센트 이하일 것.라. 기준경상연구개발비가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로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가 축소개시일로부터

국내복귀 대상업종의 경우, 기존에는 제조업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을 통해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산업 등으로 확대되었다.

국내복귀 인정을 위한 생산제품 범위의 경우, 기존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세분류(4단위)가 일치해야 하였으나, 이후 소분류(3단위) 일치로 완화되었다. 또한, 소분류 상 일치하지 않더라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소재·부품·생산공정 등의 유사성을 검토하여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게 하였다.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준 관련 주요 변경사항 비교]

구분	기존	변경	비고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완화	해외사업장 50% 이상 축소	해외사업장 25% 이상 축소	「해외진출기업복귀법시행규칙」(’19. 8. 19. 일부개정 및 시행)
대상업종 확대	제조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해외진출기업복귀법」(’20. 3. 11. 시행)
업종 동일성 기준 완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세분류(4단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세분류(3단위)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19. 8. 13. 일부개정 및 시행)
	-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유사성 등 심의에 따라 동일성 인정 가능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20. 11. 10. 일부개정 및 시행)

주: 비교에서는 변경 개시된 시점의 법령, 고시 등을 기술

자료: 개별 정책을 바탕으로 재작성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의 90퍼센트 이하일 것

2.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제1호 외의 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서비스의 생산량(이하 이 조에서 “매출액등”이라 한다)이 축소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등의 75퍼센트 이하일 것② 제1항에 따라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축소완료일 및 축소개시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경상연구개발비 또는 매출액등을 파악하기 곤란하면 해당 축소완료일 및 축소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경상연구개발비 또는 매출액등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내복귀기업의 주요 선정절차는 크게 신청·접수 → 검토·심사 → 심사보고 → 선정확인으로 이루어지며,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내복귀기업 선정절차]

단계	내용	주체
신청·접수	☐ 국내 기업 명의로 신청 • 해외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내모기업 * 국내모기업이 없는 경우, 해외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자가 국내법인(개인사업자 가능) 설립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기업 → KOTRA
↓		
검토·심사	☐ 국내복귀기업 자격요건 검토 및 1차 심사 ☐ 해외법인 실체조사 ☐ 심의위원 검토	KOTRA
↓		
심사보고	☐ 심사보고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KOTRA → 산업통상자원부
↓		
선정여부결정, 선정확인서 발급	☐ 심사보고서 검토 ☐ 선정 여부 결정 및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 신청기업

자료: KOTRA, 「국내복귀지원제도. zip - 유턴기업 Summary Guide」, 2020.11.

(2) 세제 지원

세제 지원은 크게 법인세 및 관세 감면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모든 기업들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세 및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 지원을 위한 요건은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복귀기업의 법인세 및 관세 감면은 현행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축소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¹⁴⁾, 2021년 2월 17일 일부개정·시행된 「조세특례제

14) 이외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입주, 창업 또는 신·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해외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 해외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증설,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축소, 복귀전·후 영위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할 것 등의 조건도 있다.

한법 시행령」 104조의 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서는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축소요건을 폐지하고, 해외사업장 감축량에 비례하여 감면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법인세 및 관세 감면 대상 기업규모의 경우 2018년 12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전까지는 중소·중견기업만 법인세 감면 대상이었으나, 동 개정 이후부터는 대기업도 법인세 및 관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었다. 대상지역의 경우에도 동법 2016년 12월 20일 일부개정에 기존 비수도권에서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수도권까지 확대되었다.

한편, 법인세 및 관세 감면을 위한 업종 동일성 요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까지 동일하여야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국내복귀기업 법인세 및 감면 관련 주요 변경사항 비교]

구분	기존	변경	비고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완화 (예정)	해외사업장 50% 이상 축소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폐지 예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6호, '21.1.)
대상 기업규모 확대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대기업	「조세특례제한법」 (’18.12.24. 일부개정 및 ’19.1.1 시행)
대상지역 확대	비수도권	비수도권·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조세특례제한법」 (’16.12.20. 일부개정 및 ’17.1.1 시행)
동일성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4단위)	좌동	-

주: 비교에서는 변경 개시된 시점의 법령, 고시 등을 기술

자료: 개별 정책을 바탕으로 재작성

법인세 감면의 경우,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11조(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이외의 지역에 복귀하는 대·중견·중소기업에 대하여 국내투자사업장에서 소득¹⁵⁾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최대 7년간 50~100%의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국내복귀기업 법인세 감면 내용]

구분	비수도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5년간 100% + 2년간 50%	최대 7년간 50~100% 감면 (5년간 100% + 2년간 50%)
해외사업장 축소·유지		최대 5년간 50~100% 감면 (3년간 100% + 2년간 50%)

주: 법인세 감면은 국내투자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개시. 단,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귀속 과세연도까지 소득발생이 없으면 그 시점부터 과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2020.3.

관세 감면의 경우, 신규 또는 중고 자본재 도입을 대상으로 기존에는 관세감면 비율과 함께 감면금액 한도가 규정¹⁶⁾되어 있었으나, 2019년 1월 1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부터는 감면금액 한도가 폐지되고 관세감면 비율에 따라 감면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지원대상에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로 확대되었다.

[국내복귀기업 관세 감면 내용]

구분	관세감면율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100%
해외사업장 축소·유지	50%

주: 신규 또는 중고 자본재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에 대하여 감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2020.3.

15) 국내사업장을 증설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6) 2016년까지는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시 2억원, 축소 시 1억원의 관세 감면금액 한도가 있었으며, 2017~2018년에는 감면한도가 2배씩 증가하여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시 4억원, 축소 시 2억원이었다. 2019년부터 관세 감면금액 한도는 폐지되고 관세감면율에 따라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법인세·관세 등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액의 20%를 다시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였으나, 2020년 2월 11일 일부개정 및 시행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6항제1호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의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고 있다.

(3) 보조금 지원

① 입지·설비·이전보조금

보조금 지원은 크게 입지·설비·이전 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모든 기업들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급을 위한 요건은 완화되고 있으며 지원규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입지·설비 보조금 지급을 위한 요건의 경우, 지급대상 기업규모가 대기업까지 확대되었으며, 상시고용인원 요건이 30인에서 20인으로 완화되고 2020년 8월 31일부로 폐지되었다. 지원규모의 경우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규모(합산 총액 기준)가 2014년 70억원 이내¹⁷⁾였으나, 2020년부터는 기업당 600억원(사업장당 300억원) 이내로 확대되었다.¹⁸⁾

입지 보조금의 경우 토지매입금액에 대하여 일정 지원비율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지며, 대기업과 수도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설비보조금의 경우 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에 대하여 일정 지원비율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진다.

한편, 이전 보조금의 경우 2020년부터 기업당 4억원 이내에서 운송비용·해체 및 재설치·보험료/수수료 등 해외사업장 이전 소요비용에 대하여 일정 지원비율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진다.

17) 산업통상자원부·KOTRA, 「U턴기업지원 종합가이드」, 2014.7.

18) 2020년 11월부터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국내복귀기업이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입지·설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도권의 경우 첨단업종만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300억원(사업장당 150억원)이내이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zip - 유턴기업Summary Guide」, 2020.11.)

[입지·설비보조금 지급 규모 및 주요 기준(2020년)]

구분		지급 기준	비고
지원규모		기업당 600억원(사업장당 300억원)이내 (입지·설비보조금 합산 기준)	수도권은 첨단업종만 대상 (기업당 300억원 (사업장당 150억원) 이내)
지원 비율	북귀 지역	수도권, 수도권인접지역, 일반지역, 지원우대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북귀지역별 차등지원 (11~44%)
	상시 고용 인원	30인 → 20인 → 폐지(20.8.31)	기업규모(대·중견·중소)에 따라 고용인원별 지원비율 가감
	투자 규모	50~100억원, 100~500억원, 500~1,000억원, 1,000억원 이상	기업규모(대·중견·중소)에 따라 투자규모별 차등지원
	특정 업종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첨단업종 등	지정업종에 따라 지원비율 가산
타당성 평가		평가점수 60점 이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우, 50점 이상

합산하여
최대
10%p

자료: 산업통상자원부·KOTRA, 「국내북귀기업 지원제도.zip - 유턴기업Summary Guide」, 2020.11.를 바탕으로 제작됨

②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은 사업자가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경우, 사업자가 신규고용 인원에 지급한 인건비의 80% 한도로 2년간 100명까지 지급할 수 있다. 고용창출장려금의 경우 지원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었다.

대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중소기업은 포함한 우선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연간 지급총액 한도 등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규모 및 주요 기준(2020년)]

구분	연간 총액 한도	회차별(3개월 단위)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인	180만원/인
중견기업	360만원/인	90만원/인

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제조업 500명 이하, 정보통신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300명 이하를 의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KOTRA, 「국내북귀기업 지원제도.zip - 유턴기업Summary Guide」, 2020.11.

(4) 기타 주요 지원

세계 지원 및 보조금 지원 이외에도, 현재 외국인고용(E-7 및 E-9 비자)¹⁹⁾, 구조조정컨설팅, 스마트공장, 입지, 금융, 지식재산권, 보증·보험우대, R&D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²⁰⁾

[국내복귀기업 대상 기타 주요 지원]

구분	주요 지원 내용
외국인 고용	- E-7 비자 발급: 해외사업장 5년 이상 근무 외국인 생산관리자 대상 E-7 비자 발급 허용(국내투자사업장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수의 30% 범위 내) - E-9 쿼터 확대: 중소기업이 5억원 이상 설비투자 완료 시,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한 도입 쿼터 이외에 내국인 고용인원만큼 E-9 근로자 추가고용 허용
구조조정 컨설팅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일정요건 만족 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컨설팅 비용의 30~70% 지원(USD 20,000 한도)
스마트공장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9억원 한도 -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사업(사업비 50%, 5억원 한도), 스마트공장 신규구축(사업비 50%, 1.5억원 한도) 및 고도화2 사업(사업비 50%, 2억원 한도) 등
입지	- 비수도권 대상 - 국·공유재산 사용특례 -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및 최장 50년 국·공유지 임대가능 - 국·공유지 임대료 산정 특례(재산가액 1% 이상) 및 감면(최대 50%) 등 - 산업단지 우선 입주 - 국가·일반·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선정 시 국내복귀기업 우대 - 동반복귀기업 입주 시 전용 산업단지 지정 요청 가능
금융	- 비수도권 대상 - 시설투자금액 80~90% 대출 지원(최저 1.5%로, 기업신용도에 따라 차등) - 운영자금 저리 대출, 소요자금(수출입금액)의 80~100% 등
지식재산권	- 중소·중견기업 대상 - 특허청 IP-R&D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지원대상 기술분야: IoT, 스마트홈, 환경, 스마트자재, 기타
보증·보험 우대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 무역(수출) 보험·보증 지원
R&D	- 산업기술 R&D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하는 R&D(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zip - 유턴기업Summary Guide」, 2020. 11.를 바탕으로 제작성

19) E-7 비자(특정활동)는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사증 종류를 지칭한다. E-9 비자(비전문취업)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사증 종류를 의미한다. (자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장기체류자격))

20) 이외에도, 2020년 3월 11일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을 통해 지원절차도 일부 간소화되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가. 국내복귀기업 주요 현황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6년 9개월간 국내복귀기업은 84개였으며,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진출국별로는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수는 총 93개였으나, 이 중 폐업 7개와 철회 2개를 제외하면 국내복귀기업은 총 84개이다.

한편, 2014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 및 일부개정과 함께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등과 같은 다양한 대책의 추가적인 발표를 통해 국내복귀 관련 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국내복귀기업의 연간 복귀성과의 경우에는 양적으로 미진한 가운데 등락을 반복하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연평균 국내복귀기업 수('14~'20.9.)는 약 12개 수준이었으며, 연간 국내복귀기업 수는 2014년 20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7년(4개)부터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9년 16개를 기록하였고 2020년 9월말 기준으로 20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하면서 증가세를 보였다.

[국내복귀기업 수 연간 추이(2014~2020년 9월)]

(단위: 개)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14~’19)	2020 (20.9.기준)	계 (‘14~20.9.)
선정(A)	27	4	12	4	10	16	12	20	93
폐업(B)	5	1	0	0	1	0	1	0	7
철회(C)	2	0	0	0	0	0	1	0	2
계(D=A-B-C)	20	3	12	4	9	16	10	20	84

주: 계는 국내복귀 선정기업에서 폐업·철회를 제외한 조업중·준비중인 기업 수 합계를 의미.

국내복귀기업 선정과 실제 조업 시점 간에는 시차 존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은 대기업 1개²¹⁾, 중견기업 11개, 중소기업 81개로, 전체 국내복귀 선정기업의 87.1%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조업중인 기업은

대기업 1개, 중견기업 4개, 중소기업 40개로, 전체 국내복귀 선정기업 대비 48.4% 수준이다.

[기업규모별 국내복귀기업 수(2014~2020년 9월)]

(단위: 개,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9.		합계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대기업	조업중	-	-	-	-	-	-	-	-	-	-	1	6.3	-	-	1	1.1
	준비중	-	-	-	-	-	-	-	-	-	-	-	-	-	-	-	-
중견기업	조업중	1	3.7	-	-	1	8.3	-	-	-	-	2	12.5	-	-	4	4.3
	준비중	-	-	-	-	-	-	-	-	-	-	1	6.3	6	30.0	7	7.5
중소기업	조업중	16	59.3	1	25.0	8	66.7	2	50.0	6	60.0	5	31.3	2	10.0	40	43.0
	준비중	3	11.1	2	50.0	3	25.0	2	50.0	3	30.0	7	43.8	12	60.0	32	34.4
	철 회	5	18.5	1	25.0	-	-	-	-	1	10.0	-	-	-	-	7	7.5
	폐 업	2	7.4	-	-	-	-	-	-	-	-	-	-	-	-	2	2.2
계		27	100	4	100	12	100	4	100	10	100	16	100	20	100	93	100
	조업중	17	63.0	1	25.0	9	75.0	2	50.0	6	60.0	8	50.0	2	10.0	45	48.4
	준비중	3	11.1	2	50.0	3	25.0	2	50.0	3	30.0	8	50.0	18	90.0	39	41.9

주: 1. 비중은 연도별 합계 대비 비중을 의미. 국내복귀기업 선정과 실제 조업 시점 간에는 시차 존재
 2. 2020년은 2020년 1~9월 기준
 3. 계는 기업규모별(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조업중·준비중·철회·폐업을 합산한 수치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조업중·준비중)의 기존 진출국은 중국이 84.5%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베트남(9.5%), 필리핀(2.4%) 등의 순이었다.

[국내복귀기업 기존 진출국 구성(2014~2020년 9월)]

(단위: 개, %)

구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미국	계
기업수	71	8	2	1	1	1	84
비 중	84.5	9.5	2.4	1.2	1.2	1.2	1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1) 2020년 9월 현재 국내복귀 대기업은 2019년에 국내로 복귀하여 조업중인 현대모비스로, 최초·유일한 대기업 국내복귀사례이다.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의 주요 업종은 전자·주얼리·자동차 등이었으며, 주요 복귀지역은 전북·부산·경기·경북 등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국내복귀기업의 주요 업종은 전자(20.2%)·주얼리(15.5%)·자동차(14.3%) 등이었으며, 금속·신발(각 9.5%), 기계(8.3%) 화학(7.1%), 섬유(6.0%) 순으로 집계되었다.

[국내복귀기업 업종별 구성(2014~2020년 9월)]

(단위: 개, %)

구분	전자	주얼리	자동차	금속	신발	기계	화학	섬유	기타	계
기업수	17	13	12	8	8	7	6	5	8	84
비 중	20.2	15.5	14.3	9.5	9.5	8.3	7.1	6.0	9.5	100

주: 기타는 식품, 주방기기, 인쇄업, 콘택트렌즈 등 포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지역별 국내복귀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이 21.4%(18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부산 15.5%(13개), 경북 13.1%(11개), 경기 11.9%(10개)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복귀기업 지역별 구성(2014~2020년 9월)]

(단위: 개, %)

구분	전북	부산	경북	경기	충남	인천	경남	세종	대구	광주	울산	충북	전남	강원	계
기업수	18	13	11	10	8	5	5	4	2	2	2	2	1	1	84
비 중	21.4	15.5	13.1	11.9	9.5	6.0	6.0	4.8	2.4	2.4	2.4	2.4	1.2	1.2	1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주요 복귀업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국내복귀기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전자 기업의 경우, 경기도 전체 전자 복귀기업 17개 중 5개(29.4%)로 가장 많이 입지하였다. 여타 지역에는 1~2개로 유사한 비중을 보였다.

두 번째로 높은 국내복귀기업 비중을 보인 주얼리 기업의 경우, 전라북도에 전체 주얼리 복귀기업 13개 중 12개(92.3%)가 집중되었다.

자동차 기업의 경우 총 12개 복귀기업 중 경북(4개, 33.3%)과 충남(2개, 16.7%)이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신발 기업의 경우 총 8개 복귀기업 모두가 부산으로 복귀하였다. 금속·기계·화학·섬유 기업의 경우 복귀지역별로 1~2개로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입주형태별로 살펴보면,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기업의 86.9%(73개)가 산업단지로 복귀하였다.

[업종별·지역별 국내복귀기업 입주형태]

(단위: 개)

업종	지역	일반	산업단지	업종	지역	일반	산업단지
전자 (17)	전북	-	2	기계 (7)	전북	-	1
	경북	-	2		부산	-	2
	경기	4	1		경북	-	1
	충남	1	1		충남	-	1
	인천	-	2		세종	-	2
	세종	-	1	화학 (6)	전북	-	1
	경남	-	1		경북	-	2
	광주	-	1		경남	-	1
	충북	-	1		울산	-	1
신발 (8)	부산	1	7		강원	-	1
자동차 (12)	경북	-	4	섬유 (5)	전북	-	2
	충남	-	2		경북	-	1
	인천	-	2		대구	-	1
	경남	-	1		전남	-	1
	대구	-	1	주얼리 (13)	전북	-	12
	광주	-	1		인천	-	1
	울산	-	1	기타 (8)	부산	-	1
금속 (8)	부산	-	2		경기	2	1
	경북	-	1		충남	-	1
	경기	1	1		세종	-	1
	충남	1	1		경남	-	1
	경남	-	1		충북	1	-
				계		11	7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국내복귀기업 주요 지원 현황

(1) 법인세 및 관세 감면 현황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법인세 감면건수는 15건, 감면액은 15억원 규모였으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관세 감면건수는 28건, 감면액은 3억원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법인세 감면²²⁾건수는 총 15건으로 연평균 3.8건 수준이었다. 총 법인세 감면금액은 약 15억원 규모로 건당 1억원 가량의 감면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는 2억 3,400만원~5억 7,100만원 수준이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관세 감면 건수는 총 28건으로 연평균 4.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동안의 총 관세 감면금액은 약 3억원 수준으로 건당 약 1,100만원 가량이었으며, 연도별로는 1,300만원~9,9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내복귀기업 대상 법인세·관세 감면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법인세 감면		관세 감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	-	-	8	79
2015	2	365	5	25
2016	5	571	3	47
2017	4	234	4	13
2018	4	284	2	13
2019	집계중	집계중	6	99
합 계	15	1,454	28	276

주: 1. 법인세 및 관세 감면 합계는 2014~2018년 기준

2. 법인세 및 관세 감면의 경우 국세청·관세청에서 감면받은 기업명을 비공개하여 업체수의 중복집계가 있을 수 있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2) 법인세 감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에 따라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 국내 복귀를 실시하는 대·중견·중소기업에 대하여 최대 7년간 50~100% 감면이 이루어진다.

[국내복귀기업 법인세 감면 기준]

구분	국내복귀 형태 및 감면 기준	
형태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 청산·양도]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후 국내복귀 해외사업장 축소 후 비수도권 국내복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 축소] 해외사업장 축소 후 수도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제외) 국내복귀
감면	7년(5년간 100% + 2년간 50%)	5년(3년간 100% + 2년간 50%)

주: 1. 국내복귀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동일제품 생산(세분류, 4단위) 및 해외사업장 50% 축소 요건 충족 필요

2. 2021년부터 해외생산량 감축 요건(현행 50% 이상)을 폐지하되, 해외생산량 축소수준에 비례한 감면한도 신설로 변경될 계획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투자보조금 및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현황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투자보조금 지급건수는 10건, 지급규모는 214억원이었으며, 2015~2019년간 총 고용창출장려금 지급건수는 17건, 지급규모는 31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투자보조금 지급²³⁾건수는 총 10건으로 연평균 1.7건 수준이었다. 총 투자보조금 지급액은 약 214억원 규모였으며 건당 보조금 지급액은 21억원 수준이었고, 연도별로는 22억 5,500만원~74억 5,600만원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고용창출장려금 지급²⁴⁾건수는 총 17건으로 연평균 3.4건 수준이었다. 동기의 총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액은 약 31억원 규모였으며 건당 보조금 지급액은 2억원 수준이었다. 연도별 지급액의 경우, 500만원~13억 3,5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내복귀기업 대상 보조금 지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투자보조금(입지·설비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	3	4,429	-	-
2015	1	2,255	7	969
2016	2	4,258	6	1,335
2017	2	3,033	2	477
2018	-	-	1	324
2019	2	7,456	1	5
합 계	10	21,431	17	3,11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3) 투자보조금(입지·설비보조금)은 사업장당 300억원 이내(수도권은 150억원이내, '20.11.)로 복귀지역별·고용규모별·투자규모별·업종별로 차등화하여 지급할 수 있다.

24) 고용창출장려금은 신규고용인원 인건비 80% 한도로 지급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제조업 500명 이하, 정보통신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300명 이하) 대상 연간 720만원/인, 중견기업 대상 연간 360만원/인 한도로 2년간 지급할 수 있다.

다. 국내복귀 관련 주요 실태

(1) 개요

국내복귀와 관련하여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설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동 실태조사에서는 국내복귀를 고려하거나 고려하지 않는 경우 그 요인, 국내복귀 시 필요한 정책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본절에서는 상기 3개 기관의 국내복귀 관련 최근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우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관련 복귀고려요인 및 미고려요인, 국내복귀를 위한 정책 수요 등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²⁵⁾

국내복귀 ①주요 고려요인은 크게 내부적(국내) 요인, 외부적(기존 진출국)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내부적 요인으로는 국내복귀시 인센티브, 숙련노동 확보의 상대적 용이성, 신산업 성장,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등이 존재하였다. 주요 외부적 요인으로는 현지의 생산비용 상승,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 공급망리스크, 규제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반면, 국내복귀를 ②고려하지 않는 주요 요인으로는 국내의 높은 생산비용, 협력사로 진출, 노사·환경 등에서의 각종 규제와 같은 응답이 존재하였다.

국내복귀를 위한 ③정책수요로는 세제 및 보조금 측면의 지원 강화, 금융지원, 고용지원, 각종 규제 완화, 기술경쟁력 강화 및 자동화설비 지원, 수도권 지원, 이전 비용 지원, 선정요건 완화 등이 제안된 바 있다.

25)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태조사 결과와 여타 국내복귀 관련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복귀 요인들 간에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국내복귀를 위한 동기를 해외여건 악화와 국내여건 개선으로 구분하고 있다. ①해외여건 악화의 경우, 인건비 상승, 외자기업 특혜 축소, 낮은 노동생산성, 비효율적 자원활용, 환경 등 각종 규제 강화, 가격경쟁 심화, 기술보호 및 유출, 원부자재 조달비용 증가, 유통망 확보 어려움, 환율 변동 등이며, ②국내여건 개선의 경우, 한국 브랜드 이미지, 내수시장 신속대응, 고부가가치 제품 추구, 우수 노동력 확보, 국산부품 및 소재조달, 제휴강화, 운송비 절감 및 내수시장 공략 등이 제시된 바 있다.

[국내복귀 주요 고려 / 미고려요인 및 정책수요]

구분	주요 내용
국내복귀 고려요인	- 내부적(국내) 요인 : 인센티브, 숙련노동 확보 용이, 신산업 성장,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Made in Korea 효과, FTA 활용 등 - 외부적(기존 진출국) 요인 : 현지 생산비용 상승, 낮은 생산성, (코로나19 등에 따른) 공급리스크 발생, 규제강화 등
국내복귀 미고려요인	현지 내수시장 진출, 국내의 높은 생산비용, 협력사로 진출, 노사·환경 등 각종 규제 등
국내복귀를 위한 정책수요	세제 감면, 보조금 지원, 금융지원, 고용지원, 노동·입지·환경 등 규제완화, 기술경쟁력 강화지원, 자동화설비 지원, 수도권 지원 강화, 이전비용 지원, 선정요건 완화 등

주: ‘주요 내용’에 포함된 각각의 요인 및 정책수요의 경우 실태조사별로 응답비중이 상이할 수 있어, 개별 요인 및 정책수요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응답비중은 개별 실태조사에서 제시

자료: 각 실태조사 결과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산업통상자원부 실태조사

①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실태조사

2017년 9월 실시한 산업통상자원부의 1,299개 해외진출기업 대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신·증설할 의향이 있는 기업은 전체 설문대상기업의 0.04%인 5개로 조사되었다.

이 때, 한국으로의 이전 및 신·증설을 고려하는 사유로, 한국이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좋고, 우수인력·기술기반이 양호하며 한국이 체결한 FTA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 등에 대한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한국으로의 복귀(이전 및 신·증설)를 고려하지 않는 요인으로는, 현지 내수시장 직접진출(42.7%), 한국의 높은 생산비용(21.8%), 우리나라 원청기업의 협력사로 진출(13.4%)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실태조사 시 한국으로의 복귀 미고려 사유]

(단위: %)

주요 미고려 사유	응답비중
현지 내수시장 직접 진출	42.7
한국의 높은 생산비용	21.8
우리나라 원청기업의 협력사로 진출	13.4
협소한 한국의 내수시장	2.8
한국의 노사·환경·입지 등 각종 규제	1.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내복귀 및 신·증설을 위해 필요한 정책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정책은 세제 감면(35.7%)이었으며, 입지·설비보조금(12.3%), 금융지원(7.3%), 고용지원(6.4%), 규제완화(6.0%), 기술경쟁력 강화지원(2.6%)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② 2020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실태조사

2020년 3월 실시한 산업통상자원부의 1,028개 해외진출기업 대상 실태조사에 서도²⁶⁾, 한국으로 복귀의향이 있는 기업은 전체 설문대상기업의 1.1% 수준인 11개로 여전히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국으로의 복귀 검토 사유로는, 복귀 인센티브가 가장 높은 응답률(45.5%)을 보였으며, 숙련노동력 확보의 용이성과 Made in Korea 효과(각 36.4%)가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더불어, 신산업 성장,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등과 같이 한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연계된 답변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면, 한국으로의 복귀 미고려 요인으로는, 생산비용 상승이 66.7%로 가장 높았으며, 노동환경규제가 58.3%로 뒤를 이었다.

26)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7월에도 국내복귀기업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실태조사 결과는 비공개하고 있다.

[2020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실태조사 시 한국으로의 복귀 고려/미고려 사유]

(단위: %)

한국으로의 복귀 고려 사유	비중	한국으로의 복귀 미고려 사유	비중
복귀 인센티브	45.5	생산비용 상승	66.7
숙련된 노동력 확보 용이	36.4	노동환경	58.3
Made in Korea 효과	36.4	각종 규제	33.3
신산업 성장 등 한국의 산업적 특성	27.3	구인난	25.0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18.2	기타	8.3
FTA 효과 등 통상 요인	9.1		

주: 복수응답 가능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으로의 복귀 고려 시 희망 지원사항은 투자보조금 지원(35.6%), 세제지원(20.7%), 자동화설비 지원(14.9%), 환경규제 완화(13.9%), 대출 등 금융지원(11.5%), 수도권 지원 강화(0.5%) 등으로 응답하였다.

(3)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국·베트남에 현지법인이 있는 중소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국내복귀의향 등과 관련하여 2020년 6월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국내복귀 의향이 있는 기업은 16개로 전체의 8.0%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으로의 복귀 의향 요인으로는, 현지 생산비용 상승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현지 생산제품의 낮은 품질 및 낮은 노동생산성(37.5%), Made in Korea 이미지 활용(31.3%), 현지 공급리스크 발생 및 규제강화(각 25.0%), 우리 정부의 유턴기업 인센티브(12.5%) 등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국내복귀 의향이 없는 이유로, 국내의 높은 생산비용이 63.2%로 가장 높았으며, 현지 내수시장 접근성(25.0%), 현지 원청기업과의 관계(23.0%) 등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020년 6월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시 한국으로의 복귀 고려 / 미고려 사유]

(단위: %)

한국으로의 복귀 고려 사유	비중	한국으로의 복귀 미고려 사유	비중
현지 생산비용 상승	50.0	국내 높은 생산비용	63.2
현지 생산제품의 낮은 품질 및 낮은 노동생산성	37.5	현지 내수시장 접근성	25.0
Made in Korea 이미지 활용	31.3	현지 원청기업과의 관계	23.0
현지 공급리스크 발생	25.0	국내 각종 규제 (노동, 환경 등)	9.9
현지 규제강화	25.0	국내 경기침체	9.2
우리 정부 유턴기업 인센티브	12.5	현지 정부 외자기업 인센티브	2.0
전문지식 및 지식재산권 유출 방지	6.3	유턴기업 인센티브 부족	2.0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리쇼어링’ 관련 의견 조사 결과보고서」, 2020.6.을 바탕으로 재작성

국내복귀정책과 관련한 정책수요로, 조세 감면 확대가 32.5%로 가장 높았으며, 보조금 지원 확대(26.0%), 공장 이전비용 지원(19.0%), 노동규제 완화(15.5%), 유턴 기업 선정요건 완화(4.0%), 입지규제 및 환경규제 완화(각 1.5%)로 나타났다.

(4) 대한상공회의소 실태조사

대한상공회의소가 2020년 6월 실시한 국내 제조업체 308개 대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외공장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복귀 의향을 조사한 결과, 5.6%만이 국내복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동 조사에서 응답한 국내이전 기피요인으로는 해외사업장의 낮은 생산비용 (58.3%), 현지시장진출(38.1%)에 대한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라. 국내복귀기업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주요 정책 분석 방향

첫째,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본격 시행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대기업 국내복귀가 1개에 불과한 현황을 감안하여, 대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국내복귀기업 수는 84개²⁷⁾로, 같은 기간 동안의 해외진출 신규법인수(22,405개) 대비 0.4%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85.7%(72개)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대기업 복귀 비중은 1.2%(1개)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국내복귀 고려/미고려 요인, 정책수요 등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를 분석하여, 국내복귀 주력 대상 분석 등 국내복귀 정책의 추진 방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지시장진출, 저임활용 등의 목적으로 해외로 진출한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국내복귀 확대를 유도할 정책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목적으로 현지시장진출 및 저임활용이 90.9%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²⁸⁾. 그러나 현지시장진출 및 저임활용을 위해 해외로 진출한 기업의 국내복귀 유도는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현지시장진출의 목적의 경우 해외판로 유지 및 시장 확대, 인근국가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등의 요인으로 국내복귀 유도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 저임활용의 경우에도, 중국, 베트남 등 주요 진출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²⁹⁾ 따라서 국내복귀정책의 주력 대상 검토 등 향후 우리나라의 국내복귀정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27) 84개는 국내복귀기업 선정후 2020년 9월 현재 조업중·준비중인 기업수를 의미하며, 84개 중 조업중인 국내복귀기업수는 45개, 준비중인 국내복귀기업수는 39개 규모이다.

28)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주요 해외진출목적은 현지시장진출(68.4%), 수출촉진(10.4%), 제3국진출(6.4%), 저임활용(5.7%), 선진기술도입(2.1%), 자원개발(1.0%), 보호무역타개(0.2%)으로 조사되었다(목적미분류 5.9% 제외). 다만, 현지시장진출, 수출촉진, 제3국진출의 경우 해외현지의 시장개척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현지시장진출로 범주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의 주된 해외진출목적을 크게 현지시장진출, 저임활용으로 보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를 바탕으로 재작성)

29)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 기업의 주요 해외진출국이자 국내복귀국인 중국과 베트남을 위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셋째,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복귀기업 인정·지원요건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국내복귀를 위한 진입장벽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본격 시행된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 수는 84개로 연평균 11~12개 수준이며, 이 중 대기업은 1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세제 감면과 보조금 지원이 국내복귀를 위한 기업들의 정책수요 중 수위(首位)를 차지하고 있는 한편, 실제 세제 감면 규모는 크지 않은 수준이다. 더불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해외 주요국들이 자국복귀 강화를 천명한 상황에서 국내복귀 인정 및 지원요건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비해 국내복귀를 폭넓게 바라보는 경향이 존재하며, 국가별로 일률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국내복귀기업의 수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비해 많은 수준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에, 광의의 국내복귀 인정과 지원제도 측면에서의 개선 방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내복귀를 통한 투자 및 고용계획을 살펴보고, 동 계획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관리체계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0년 9월 현재 국내로 복귀한 84개 기업의 투자계획은 1조원을 상회하고 고용계획은 3천명 이상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약화³⁰⁾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 투자 및 고용 확대 계획의 현실화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따라, 국내 투자 및 고용 확대 계획 등과 같은 국내복귀정책의 주요 성과목표의 수립여부 및 성과관리 방향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부분의 국내복귀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현황을 감안하여, 기존의 지자체 발전전략과의 연계성과 국내복귀에서의 지자체 역할 강화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의 84개 국내복귀기업 중 대다수인 74개 기업(88.1%)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국내복귀기업 선정절차 상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가 주요 주체이고, 지자체는 선정절차 상에서의 역할이 부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역발전전략과의 연계, 국내복귀기업

30) 일례로, 현대·기아차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중 하나인 와이어링 하네스를 공급받아 재고분을 일주일치 가량 비축하여 왔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중국생산이 차질을 빚어 부품수급이 비상상황에 처하며 타력적 휴업과 감산을 발표한 바 있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생산부터 부품 수급까지 신종코로나에 제조업 차질’, 무역뉴스(2020.2.7.))

유치를 위한 지자체별 적극적 유치노력의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복귀기업 주요 정책 분석 방향]

주요 정책 분석 방향
□ 대기업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필요성 검토 • 대기업 복귀 시 동반복귀 사례 및 관련 투자계획 분석 • 관련 실태조사 결과 분석 • 우리나라 대기업 지원정책과 해외유사사례 간 비교 검토 □ 첨단산업화·고부가가치화 지원 강화 필요성 검토 • 첨단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자국복귀 국내외 사례 분석 • 국내복귀 고려/미고려 요인 및 정책수요 등 관련 실태조사 결과 분석 • 첨단산업화·고부가가치화 지원 방향성 검토 □ 국내복귀 지원요건 완화 방향성 검토 • 실태조사에서의 국내복귀 고려요인 및 정책수요 분석 • 국내복귀기업 인정기준 및 복귀기업 현황 검토 • 해외유사사례 및 추진방향 점검 • 국내복귀기업 인정·지원 정책 방향성 검토 □ 국내복귀정책의 성과목표 설정 및 관리방안 검토 • 국내복귀기업 투자·고용계획 현황 검토 • 국내복귀정책 성과목표 수립 여부 점검 • 국내복귀정책 성과관리 및 제고 방향성 검토 □ 국내복귀정책에서의 지자체 역할 강화 필요성 검토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상의 주력산업과 지역별 국내복귀산업 비교 • 국내복귀기업 선정 등 주요 절차에서의 지자체 역할 검토

첫째,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국내복귀기업 84개 중 대기업은 1개에 불과하나 동반복귀 측면에서는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강점이 존재하므로, 실질적인 국내복귀 성과 확대를 위해 대기업 관련 국내복귀정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 신규법인수와 투자금액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9년간 전체 해외진출국가를 기준으로 평균 신규법인수 비중은 대기업이 8.7%로 중소기업의 1/7 수준이었으나, 대기업의 평균 투자금액 비중은 72.5%로 중소기업 대비 2.9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의 주요 해외진출국이자 국내복귀국인 중국과 베트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대기업의 경우 신규진출한 법인 수 자체는 적으나 투자규모는 높은 수준으로, 국내복귀 시에도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의 투자금액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주요 진출국의 기업규모별 해외진출 현황(2017~2019년)]

(단위: 개, 백만불, %)

구분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2017	2018	2019	평균		2017	2018	2019	평균	
					개	비중				금액	비중
전체 국가	합 계	1,234	1,302	1,383	1,306	100	5,200	8,145	10,394	7,913	100
	대기업	110	121	111	114	8.7	3,532	5,895	7,780	5,736	72.5
	중소기업	731	775	782	763	58.4	1,481	1,937	2,441	1,953	24.7
중국	합 계	698	813	917	809	100	1,987	3,342	4,585	3,304	100
	대기업	57	57	73	62	7.7	969	1,846	2,942	1,919	58.1
	중소기업	407	490	494	464	57.3	878	1,236	1,519	1,211	36.7
베트남	합 계	536	489	466	497	100	3,213	4,803	5,809	4,608	100
	대기업	53	64	38	52	10.4	2,562	4,049	4,838	3,816	82.8
	중소기업	324	285	288	299	60.2	603	701	922	742	16.1

주: 1. 개인, 개인기업, 미분류(-) 제외

2. 주요 3개 진출국은 미국·베트남·중국이나, 본 표에서는 국내복귀기업의 주요 진출국인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수록

3. 비중은 전체 국가 대비 비율을 의미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부가가치액 비중의 경우에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기술수준이 높은 산업군일수록 이와 같은 경향이 강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 부가가치 확대와 산업기술 고도화 측면에서 상대적인 이점이 발현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부가가치액 구조를 살펴보면,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대기업 비중은 1.0%에 불과하나, 부가가치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8% 수준으로 전체 부가가치액의 절반을 상회하였다. 특히, 저위기술산업군에서 고위기술산업군³¹⁾으로 기술수준이 높은 산업군으로 갈수록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 부가가치액 비중은 높은 수준을 보였다.³²⁾

[산업군별·기업규모별 사업체수 및 부가가치액 평균(2013~2017년)]

(단위: 개, 십억원, %)

구분	사업체수(2013~2017년)			부가가치액(2013~2017년)		
	전체	중소기업	대기업	전체	중소기업	대기업
제조업	68,238 (100)	67,526 (99.0)	712 (1.0)	501,435 (100)	246,509 (49.2)	254,926 (50.8)
고위기술산업군	6,586 (100)	6,434 (97.7)	152 (2.3)	141,715 (100)	30,028 (21.2)	111,687 (78.8)
중고위기술산업군	21,224 (100)	20,939 (98.7)	285 (1.3)	160,427 (100)	87,670 (54.6)	72,758 (45.4)
중저위기술산업군	22,395 (100)	22,215 (99.2)	179 (0.8)	130,073 (100)	72,093 (55.4)	57,980 (44.6)
저위기술산업군	18,033 (100)	17,937 (99.5)	97 (0.5)	69,220 (100)	56,719 (81.9)	12,501 (18.1)

주: 1. 괄호안의 수치는 제조업 대비 각 산업군별·기업규모별 비율을 의미

2. 고위·중고위·중저위·저위기술산업군에 포함되는 사업은 각주³⁰⁾에서 상세히 기술

자료: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 웹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1) 고위기술산업군은 의약·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통신기기·가전·정밀기기·전자·항공을, 중고위기술산업군은 석유화학·정밀화학·기타 전자부품·전기기기·일반목적기계·특수목적기계·자동차·철도·기타 수송장비를, 중저위기술산업군은 석유정제·고무·플라스틱·유리·세라믹·시멘트·기타 비금속 광물·철강·비철금속·주조·조립금속·조선업, 저위기술산업군은 음식료·담배·섬유·의류·가죽/신발·목재·제지·인쇄·가구·기타제조업을 의미한다. (자료: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

32)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 웹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하였다.

그러나, 대기업 복귀에 따라 기대되는 이점과 국내복귀기업 관련 지원요건 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내복귀 대기업은 1개에 불과하였다.

대기업 국내복귀기업은 2019년 복귀한 현대모비스로, 2019년 9월부터 3,000억 원을 투자하여 연간 10만대에 해당하는 전기차 배터리시스템을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차 부품공장 건설에 착수하였다. 또한, 현대모비스 복귀시, 5개 자동차 부품기업이 동반복귀하면서, 현대모비스와 5개 자동차 부품기업의 총 투자예상액은 3,640억원 규모로 발표되었다.³³⁾

대기업 1개의 국내복귀로 인해 이루어진 국내복귀기업 수가 현대모비스 포함 6개로, 1개 대기업의 복귀로 인해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의 전체 국내복귀기업 84개 중 약 1/10(6개, 7.1%) 가량이 국내로 복귀하는 효과가 발생되었다. 또한, 투자계획 측면에서도, 같은 기간 동안의 국내복귀기업 총 투자계획규모인 1조 2,477억원 대비 29.2%(3,640억원)로, 전체 투자계획규모 대비 약 1/3 가량의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이 국내복귀 활성화에 기여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수준임을 방증한다.³⁴⁾

[대기업 동반복귀기업 비중(2019년 현대모비스 사례 기준)]

구분		(단위: 개, 억원, %)
		기업수
전체	국내복귀기업 수 (A)	84
	대기업 복귀기업 수 (B)	1
	대기업 동반복귀기업 수 (C)	5
	대기업 및 동반복귀기업 비중 ($D=(B+C)/A$)	7.1
전체	국내복귀기업 투자계획 규모 (E)	12,477
	대기업 및 동반복귀기업 투자계획 규모 (F)	3,640
	대기업 및 동반복귀기업 투자계획 비중 ($G=F/E$)	29.2

주: 1. 전체 국내복귀기업 투자계획은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의 84개 국내복귀기업 기준 투자계획임. 대기업 및 동반복귀기업 투자계획 규모는 1개 대기업과 5개 동반복귀기업 등 총 6개 국내복귀기업의 투자계획 합계를 의미

2. 전체 국내복귀기업 투자계획 규모는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1개 대기업 및 5개 동반복귀기업 투자계획 규모의 경우 청와대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 - 부품기업 국내복귀 투자양해각서 체결식(2019.8.28)」을 인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및 청와대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 - 부품기업 국내복귀 투자양해각서 체결식(2019.8.28)」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3) 청와대,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 - 부품기업 국내복귀 투자양해각서 체결식, 2019.8.28.

34) 실제로, 2020년 9월 기준 국내복귀기업당 투자계획 규모를 살펴보면, 대·중견기업의 기업당 투자계획 규모(651억 8,000만원)가 중소기업의 기업당 투자계획(64억 7,000만원)의 10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실태조사에서도 직간접적으로 동반복귀 가능성에 대한 설문결과가 집계된 바 있다. 2020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02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해외진출목적으로 ‘관계사 동반 진출’을 응답한 기업이 설문응답기업의 10.0%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유지 또는 동일지역내 확대’ 응답기업 중 관계사 동반 진출이 해외진출목적이었다는 응답 비중이 10.2%로, ‘축소/철수’ 및 ‘타지역 이전’으로 응답한 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2020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실태조사 시 응답기업 유형별 해외진출목적 비중]

(단위: %)

구분	응답기업 유형별 해외진출목적 비중			
	전체 응답기업	현행유지 또는 동일지역내 확대 응답기업	축소/철수 응답기업	타지역 이전 응답기업
현지 시장진출	59.1	59.7	58.1	39.1
생산비용 절감	30.5	29.8	34.9	52.2
관계사 동반 진출	10.0	10.2	7.0	8.7
기타	0.3	0.3	-	-

주: 전체 응답기업에는 ‘현행유지 또는 동일지역내 확대 응답기업’, ‘축소/철수 응답기업’ 및 ‘타지역 이전 응답기업’이 포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299개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한국으로 국내복귀 및 신설·증설 ‘미고려’ 사유로, ‘우리나라 원청기업의 협력사로 진출’하였다는 응답이 13.4%로 나타났다.

2020년 6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중국 및 베트남 진출 중소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 한 요인으로 ‘국내 원청기업과 동반진출’(15.0%)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바 있다.

2016년 KOTRA에서 실시한 우리나라 해외진출 대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해외진출 동기 중 시장진출, 생산비용절감 다음으로 완제품업체와의 동반진출이 높은 순위를 보였다.³⁵⁾ 국내로 복귀의향이 없는 이유도 해외진출 사유와 유사하게, 국

35)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의 주요 해외진출목적은 현지시장진출(68.6%), 수출촉진(10.4%), 제3국 진출(6.2%), 저임활용(5.7%)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현지시장진출, 수출촉진, 제3국진출의 경우 해외현지의 시장개척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현지시장진출로 범주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내 생산비용 과다, 내수시장 협소 및 포화, 완성품업체와 동반진출 등으로 지목된 바 있다. 특히, 자동차부품 및 전기전자부품 기업들은 완성품 업체와 동반진출(협력업체로 진출)하여 국내복귀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³⁶⁾

[자동차부품 및 전기전자부품 기업 국내 미복귀 요인(KOTRA 2016년 실태조사 기준)]

업종	업종별 국내복귀 관련 고려사항
자동차 부품	• 완성차 업체와의 동반진출이 주된 해외진출 이유이므로, 부품업체만의 국내복귀가 어려운 실정 • 국내시장의 협소함과 성장 정체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외에서 성장동력을 찾고자 노력중
전기전자 부품	• 완성품 업체의 협력업체로 진출한 경우가 많아, 국내복귀요인 없음 • 현지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경우 이미 생산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가 많아 국내복귀 유인이 낮음 • 전기전자 업종 또한 생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국내복귀 유인이 낮게 나타남

자료: 산업연구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또한, 중기업·소기업의 판로 중 수요기업과의 하도급 비중이 적지 않은 수준³⁷⁾임을 감안할 때, 수요대기업의 복귀가 활성화될 경우 하도급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납품경로와 판로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다.

이는 완성품업체나 원청기업을 대기업으로 전제할 경우, 대기업의 복귀로 인해 동반복귀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국내복귀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국내복귀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내복귀대책은 한정적인 상황이다. 대기업의 경우, 투자보조금 중 입지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E-9비자(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 관련, 구조조정컨설팅, 스마트공장, 금융 및 지식재산권 지원에서도 중소·중견기업과는 달리 지원대상에서 미포함되어 있다.

36) KOTRA에서 2016년 실시한 국내 주요 35개 제조 대기업 대상 1:1방문조사 결과이다. (자료: 산업연구원 제출자료)

37)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2016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부문」에 따르면, '수요기업에 대한 거래 형태가 하도급거래'로 응답한 중기업은 34.6%, 소기업 46.0%로, 중소기업의 하도급거래 비중이 1/3을 상회하는 것으로 응답한 바 있다.

투자보조금 중 설비보조금은 대기업을 대상으로도 지원되며,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비용 등에 복귀지역·고용인원·투자규모·특정업종을 고려하여 지원된다.³⁸⁾ 이전보조금의 경우 대기업도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복귀지역별로는 지급수준에 차이가 있는 반면 기업규모에 따른 차이는 없으며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기업당 4억원 이내이다.

[기업규모별·지역별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개요]

구분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수도권	수도권 (과밀이외)	수도권 (과밀이내)	비수도권	수도권 (과밀이외)	수도권 (과밀이내)
보조금	투자	입지	○	X	X	X	X	X
		설비	○	△	△	○	△	△
조 세	이전		○	○	○	○	○	○
	법인세·소득세		○	○	X	○	○	X
인 력	관세		○	○	X	○	○	X
	고용창출장려금		○	○	○	X	X	X
인 력	외국인	E-7	○	○	○	○	○	○
	고용	E-9	○	○	○	X	X	X
구조조정컨설팅			○	○	○	X	X	X
스마트공장			○	○	○	X	X	X
입지지원			○	X	X	○	X	X
금융지원			○	○	○	X	X	X
지식재산권			○	○	○	X	X	X
보증·보험우대			○	○	○	○	○	○
R&D			○	○	○	○	○	○

주: 1. △는 첨단업종의 경우 수도권 복귀 시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의미

2. 굵은 테두리는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이 다른 부분을 지칭

자료: 산업통상자원부·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zip - 유턴기업 Summary Guide」, 2020.11.를 바탕으로 재작성

반면, 일본의 경우 자국 공급망 위험 품목에 대한 국내투자 촉진의 일환으로, 2020년 코로나19 추경과정에서 2.5조원 규모의 국내복귀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³⁹⁾ 동 정책에서는 생산거점 복귀 등에 약 2,200억엔 지원, 건물취득비·설비비·시스템 구축비의 일정비율을 150억엔 한도로 국내복귀촉진보조금을 지급한다.

38)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을 합산한 투자보조금은 사업장당 300억원 이내(기업당 600억원 이내)로 지급 가능하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zip - 유턴기업 Summary Guide」, 2020.11.)

39) 일본의 국내투자촉진보조금은 일본의 공급망 위험 품목의 국내투자 촉진에 중점을 둔 지원정책으로, 우리나라의 국내복귀지원정책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한편,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시에도 국내입지촉진보조금 총 2,000억엔(250건지원) 규모의 지원을 실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공동화를 방지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코로나 공존 시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방안」, 2020.11.)

국내복귀촉진보조금 1차 지원대상으로 총 57건(법인기준 총 66개사)이 선정(응모 90건)되었으며, 지원액은 574억엔(약 6,5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머지 약 1,600억엔에 대해서는 1,670건(약 1조 7,640억엔)이 응모되어 경쟁률은 11:1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⁴⁰⁾

[일본 정부의 공급망 대응을 위한 국내투자촉진보조금 주요 내용]

유형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비율	
			대기업	중소기업
A	[기업의 생산거점 투자] •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및 이를 최대한 활용하지 않는 기술을 통해 제품을 생산	[아래 2개 요건 모두 충족] • 생산거점의 집중도 • 설비기계 장치의 첨단성	1/2 이내	2/3 이내
B	[국내 생산거점 투자] • 일시적 수요 증가로 수급에 애로가 있는 국민건강 관련 중요제품의 국내 생산거점 투자 * 중요제품: 마스크, 방호복, 인공호흡기 등	[아래 3개 요건 모두 충족] • 수요 부족 •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품목 • 설비투자 효과(물류시설만)	2/3 이내	3/4 이내
C	[공동투자] •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생산을 위한 다수 중소기업의 공동투자	[아래 3개 요건 모두 충족] • 복수의 중소기업 등의 그룹이 공동 실시·신청하는 사업 • 유형A의 요건 충족 • 그룹화에 의한 규모의 경제 또는 시너지 효과 창출	-	3/4 이내

주: 지원비율은 총 소요금액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한국무역협회, 「코로나 공존 시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방안」, 2020.11. 및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상기와 같이, 동 정책에서는 지원유형별로 국내복귀를 위한 총 소요금액 대비 지원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대기업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형태를 보였다. 즉, 대기업 복귀에서 우리나라보다 유리한 지원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0) 국내투자촉진보조금 1차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대다수는 코로나에 따른 건강 관련 업종(40건, 유형B)이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및 한국무역협회, 「일본기업들, 정부 지원으로 리쇼어링 움직임 확대」, 2020.9.)

일본정책투자은행(Development Bank of Japan, DBJ)에서 2020년에 일본 제조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래 성장 및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해외 유형고정자산에 비해 국내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할 것으로 응답한 바 있다. 이는 일본 대기업을 자국에 설비 등 생산시설을 늘릴 의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⁴¹⁾

[코로나19 이후 미래 성장 및 기업가치 향상 항목: 일본 대기업 투자 우선 항목1]

(단위: %)

구분	국내 유형고정자산에 투자	해외 유형고정자산에 투자
전산업 (n=1,140)	71	14
제조업 (n=496)	68	22
비제조업 (n=644)	73	8

자료: 한국무역협회, 「코로나 공존 시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방안」, 2020.11.을 바탕으로 재작성

일본의 대기업 국내복귀 사례를 통해 볼 때, 대기업의 국내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경우 대기업의 자국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일본과 국내복귀요인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기업규모별로 국내복귀의향 및 국내복귀 시 주요 투자부문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에서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⁴²⁾

또한, 대기업 관련 국내복귀정책 검토 시에 중소·중견기업 지원과의 공정성 측면 등에서 특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중소·중견기업 지원과의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동반복귀 및 투자·고용(계획) 규모 및 실제 달성가능성,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동반복귀에 따른 지원혜택을 조율하는 등 국내복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세밀한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1) 한국무역협회, 「코로나 공존 시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방안」, 2020.11.을 바탕으로 재작성하였다.

42) 정부는 2020년 12월 22일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일부개정(2021.6.23.시행)을 통해 동법 제16조의2(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에서 ‘협력형 유턴’(수요기업과 협력 공급사가 연계하여 복귀)에 대하여 우선·추가지원 근거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2021년 상반기 내에 후속조치를 완료할 예정으로 발표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 정부는 동 후속조치에서 국내복귀기업수 및 규모 확대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대기업으로의 지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가. 개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9조(2019.12.10. 일부개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내복귀 관련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2020년 12월 22일 일부개정(2021.6.23.시행)되어 매년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동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였다.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관련 실태조사 법령 추이]

구분	법조항
2013.8.6. 제정 (2013.12.7.시행)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 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자료를 수집·작성할 수 있다. (②~④)
2019.12.10. 일부개정 (2020.3.11.시행)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시행계획 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자료를 수집·작성할 수 있다. (②~④생략)
2020.12.22. 일부개정 (2021.6.23.시행)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시행계획 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자료를 수집·작성 하여야 한다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책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해외사업장 및 국내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하여야 한다.(③~④생략)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주: 현행 「해외진출기업복귀법」(2019.12.10. 일부개정) 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5조의2(시행계획의 수립)에서는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국내복귀기업 지원 시행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자료: 각 법령을 바탕으로 제작성

2020년 12월 10일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일부개정 시 개정이유 중 하나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정책을 시행할 기초자료인 실태조사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태조사의 중요성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⁴³⁾ 이에, 실태조사가 정책 시행의 기초가 되는 만큼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국내복귀정책의 중점 추진방향 등을 검토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첨단산업화·고부가가치화 지원 필요성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국내복귀 주요 고려요인 및 미고려요인, 국내복귀를 위한 정책수요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국내복귀 주요 고려 / 미고려요인 및 정책수요 간 유사성]

구분	주요 내용
국내복귀 고려요인(내부적) ≈ 국내복귀 정책수요	• 국내복귀 고려요인 - 내부적(국내) 요인: 인센티브, 숙련노동 확보 용이, 신산업 성장,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 제품생산, Made in Korea 효과, FTA 활용 등 ≈ • 세계 감면, 보조금 지원, 금융지원, 고용지원, 노동·입지·환경 등 규제완화, 기술경쟁력 강화지원, 자동화설비 지원, 수도권 지원 강화, 이전비용 지원, 선정요건 완화 등
국내복귀 고려요인(외부적) ≈ 국내복귀 미고려요인	• 국내복귀 고려요인 - 외부적(기존 진출국) 요인: 현지 생산비용 상승, 낮은 생산성, (코로나19 등에 따른) 공급 리스크 발생, 규제강화 등 ≈ • 현지 내수시장 진출, 국내의 높은 생산비용, 협력사로 진출, 노사·환경 등 각종 규제 등

주: 1. 국내복귀 고려요인(내부적) 중 인센티브의 경우, 사실상 국내복귀 정책수요로 볼 수 있음

2. ‘주요 내용’에 포함된 각각의 요인 및 정책수요의 경우 실태조사별로 응답비중이 상이할 수 있어, 개별 요인 및 정책수요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응답비중은 개별 실태조사에서 제시

자료: 각 실태조사 결과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3)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외진출기업복귀법」(2020.12.22.일부개정 및 2021.6.23.시행) [제정·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재작성하였다.

세부적으로, 국내복귀 고려요인 중 외부적 요인과 국내복귀 미고려요인에서도 생산비용 상승, 규제강화, 공급리스크 등과 같이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복귀 고려요인과 정책수요 상에서도 유사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에, 국내복귀에 대한 유인책과 정책 추진방향성 검토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국내복귀 미고려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① ‘현지 내수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은 국내복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시장진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투자한 기업들의 경우, 해외시장에서의 판로 유지 및 시장 확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현지 내수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경우, 국내복귀 유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② ‘생산비용’ 측면에서도⁴⁴⁾, 법정 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베트남과 중국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여, 생산비용 상의 이점으로 해외에 진출한 경우에도 국내복귀로의 유도가 용이하지는 않을 수 있다.

[한국과 주요 진출국 간 법정 월 최저임금액 비교]

(단위: USD, %)

구분	2010(A)	2018(B)	증가율((B-A)/A)
한 국	1,024	1,590	55.3
베트남	205	504	145.9
중 국	266	513	92.9

주: 노동자(employee) 1인당 법정 월 최저임금액(Statutory nominal gross monthly minimum wage의 2017 PPP\$ 기준)이며, 각년도 12월 31일 기준 자료

자료: ILO(국제노동기구) STAT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또한, 상기 3개국 중 2015~2017년간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중국(6.5%)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1.8%)에 비해 3.6배 수준이었고, 베트남(5.6%)의 경우에도 한국 대비 3.1배 가량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2005-2010년간 대비 2015-2017년간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경우, 베트남은 1.8%p 증가한 반면, 중국은 3.8%p, 한국은 1.4%p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44) 생산비용을 넓게 해석할 때 경제·사회환경, 노사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암묵적 비용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생산비용을 광의로 해석할 경우 본 보고서의 주요 분석내용인 국내복귀보다 더욱 포괄적인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절에서는 생산비용 중 노동비용(임금)을 중심으로 협의로 바라보았다.

[한국과 주요 진출국 간 기간별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 비교(2005~2017년)]

(단위: %, %p)

구분	2005-2010간 증가율	2010-2015간 증가율	2015-2017간 증가율	2005-2010 대비 2015-2017 증감
한 국	3.2	1.3	1.8	△1.4
베트남	3.8	4.3	5.6	1.8
중 국	10.3	7.2	6.5	△3.8

- 주: 1. 기간별 평균 연간 증가율(average annual growth rate) 기준. 소산업 대상
 2. 2015-2017년간 제조업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경우에도, 한국 1.3%, 베트남 4.7%, 중국 7.2%로 같은 기간 동안의 소(전)산업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음
 3. 아시아생산성기구(APO,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정부간 국제 협정에 의해 설립된 지역간 국제기구

자료: 아시아생산성기구(APO), 「APO Productivity Databook 2019」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종합하면, 생산비용의 차이로 인해 해외에 진출한 경우 국내로의 복귀 유인이 높지 않으나, 임금증가율,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감소폭 등을 비교하여 중국으로부터 공장을 이전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에 비해 임금수준에서 이점이 있는 베트남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국내복귀에 비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진출기업 대상 향후 사업전망 설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중국으로부터의 이전을 고려중인 기업들은 중국 내 생산비용 상승(34.8%)과 경쟁심화(32.3%)를 가장 높은 이전사유로 응답한 바 있다. 이전 고려 기업들의 이전 대상 지역으로는 ‘동남아시아’라는 응답이 69.8%, ‘한국’이라는 응답이 24.5% 수준이었다.⁴⁵⁾

45) 산업연구원, 「중국진출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 보고서(2020년)」, 2021.2.

[중국으로부터의 철수·이전 고려요인 및 이전 대상 고려지역]

(단위: 개, %)

구분		응답기업수	응답비중
중국으로부터의 철수·이전 고려요인	생산비용상승	55	34.8
	중국내 경쟁심화	51	32.3
중국으로부터의 이전 대상 고려지역	동남아	74	69.8
	한국	26	24.5

주: 본 표에서의 중국으로부터의 철수·이전 고려요인 비중은 158개 응답기업 대비 비중이며, 이전 대상 고려지역 비중은 106개 응답기업 대비 비중임

자료: 산업연구원, 「중국진출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 보고서(2020년)」, 2021.2.를 바탕으로 재작성

③더불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⁴⁶⁾, 협력사로 진출한 경우에는 협력관계 기업이 동반복귀하지 않는 이상 국내복귀가 현실적으로 쉽지않은 실정이다.

반면, ‘숙련노동 확보’, ‘Made in Korea 효과’, ‘신산업 성장’,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등과 같은 국내복귀 고려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첨단산업화 및 고부가가치화⁴⁷⁾ 지원 강화’가 국내복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⁴⁸⁾ 특히, ‘산업 패러다임 변화 시점(투자전환기)’에서의 첨단산업화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강화는 국내복귀 성과 확대에 대한 기여도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⁴⁹⁾

46) 「Ⅲ. 주요 정책 분석 - 1. 대기업 국내복귀 확대 필요성 검토」를 참고

47) 이하에서는 ‘Made in Korea 효과’, ‘신산업 성장’,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고부가가치화로 보았다.

48)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에서도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6.)」, 「소재·부품·장비 2.0전략(20.7.)」 등을 통해 첨단산업유치·복귀를 위한 정책을 최근 발표하고,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전략을 개선해나가고 있다는 점은 실태조사 결과가 정책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49) 현지시장진출, 생산비용절감 목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복귀 유인이 현 시점에서 낮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해당 목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경우 반드시 국내복귀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향후 국가간 웹기반 상거래 활성화, AI 및 로봇·자동화 발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상기 목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복귀 가능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 첨단산업화·고부가가치화 지원과 국내복귀 정책 간 연계 강화 필요

국내복귀와 첨단산업·고부가가치화로의 산업 패러다임 변화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국내복귀 지원정책과 첨단산업화·고부가가치화 지원정책 간에 밀접한 연계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우리나라의 대기업 국내복귀 사례는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친환경자동차 부품공장을 울산 이화산업단지로 복귀한 현대모비스가 유일하다. 다양한 국내복귀 요인이 존재하나,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로 전환된 점도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도요타, 닛산, 혼다 등 일본 자동차기업의 국내복귀도 생산지 구조조정 및 신기술개발·적용 등을 위한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 대응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자동차기업 국내복귀 사례]

구분	기업	주요 내용
2015	도요타	• 캐나다에서 생산하던 ‘렉서스RX’, 후코오카현 미야타 공장으로 생산 이전
2016	혼다	• 멕시코에서 일본 사이타마현으로 23년만에 공장 이전
2017	도요타	• ‘캠리’ 미국 인디애나주 생산 물량 10만대, 아이치현 공장으로 이전
	닛산	• 북미에서 생산하려던 ‘캐시카이’ 물량 일본 공장에서 생산
2019	닛산	• 영국 공장에서 생산하려던 ‘엑스트레일’, 일본 규슈 공장에서 생산
	혼다	• 영국 공장 2021년 폐쇄 발표, 터키 공장 시빅 생산 중단 • 영국·터키 생산물량 일본 이전 전망

자료: KOTRA, 「일본 완성차기업이 영국에서 철수하는 진짜 이유」, 2019.4.

일본 기업의 자국복귀에는 엔저 유도,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비 지원, 규제완화 등과 같은 일본 정부의 정책도 기여하였으나⁵⁰⁾,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차세대 자동차 개발을 위해 숙련노동, 연구개발, 소재·부품회사와의 협력 등의 필요성에 따라 일본 자동차 대기업의 자국복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¹⁾

5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를 활용한 제조업 혁신과 리쇼어링 유인제고 방안 연구」, 2018.12.

51) KOTRA, 「일본 완성차기업이 영국에서 철수하는 진짜 이유」, 2019.4.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하였다.

일본정책투자은행의 일본 제조 대기업 대상 조사에서, 인재육성, 연구개발, 정보화에 대한 투자의향이 높은 것으로 응답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미래 성장 및 기업가치 향상 항목: 일본 대기업 투자 우선 항목2]

(단위: %)

구분	인재육성	연구개발	정보화 투자
전산업 (n=1,140)	60	37	52
제조업 (n=496)	52	66	38
비제조업 (n=644)	67	14	63

주: 가장 높은 응답비중은 ‘국내 유형고정자산에 투자’였음

자료: 한국무역협회, 「코로나 공존 시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방안」, 2020.11.을 바탕으로 재작성

우리나라의 해외진출기업 대상 실태조사⁵²⁾ 결과에서도, 기업규모별로 구분되지는 않았으나, 숙련노동, 신산업 성장,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기술경쟁력·자동화설비 지원과 같이 첨단산업화·고부가가치화 지원과 관련된 응답이 존재하였다.⁵³⁾

52) 산업통상자원부의 2017년 9월 및 2020년 3월 해외진출기업 대상 실태조사, 2020년 6월 중국·베트남 현지법인 보유 중소기업 대상 실태조사, 2020년 6월 대한상공회의소 실태조사를 지칭한다.

53)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2018.12.)」에서는, 인더스트리4.0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첨단기술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 기업보다 10배 이상 국내 복귀경향이 높은 연구결과에 대하여 기술한 바 있다.

인더스트리4.0(Industry 4.0)이란 2011년부터 시작된 독일의 하이테크 전략으로, 독일의 국내복귀전략은 인더스트리4.0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동 정책을 통해 혁신기술과 산업이 발전하고 이를 통해 선진기술 및 신제품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자국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았다.

동 전략에 따른 자동화 및 생산성 향상으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중간재·서비스 등 구입을 통한 간접적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도 보고된 바 있다.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2018.12.)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서의 국내복귀 고려요인 및 정책수요]

구분	응답내용
산업통상자원부 (‘17.9. 및 ‘20.3.)	□ [2017.9.조사] • 국내복귀 고려요인: 인센티브, 우수인력·기술기반 양호, FTA 활용 • 정책수요: 세제감면(35.7%), 입지·설비보조금(12.3%), 금융지원(7.3%), 고용지원(6.4%), 규제완화(6.0%), 기술경쟁력 강화지원(2.6%) 등 □ [2020.3.조사] • 국내복귀 고려요인: 복귀 인센티브(45.5%), 숙련된 노동력 확보 용이(36.4%), Made in Korea 효과(36.4%), 신산업 성장 등 한국의 산업적 특성(27.3%),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18.2%), FTA 효과 등 통상 요인(9.1%) • 정책수요: 투자보조금 지원(35.6%), 세제지원(20.7%), 자동화설비 지원(14.9%), 환경규제 완화(13.9%), 대출 등 금융지원(11.5%), 수도권 지원 강화(0.5%) 등
중소기업중앙회 (‘20.6.)	• 국내복귀 고려요인: 현지 생산비용 상승(50.0%), 현지 생산제품의 낮은 품질 및 낮은 노동생산성(37.5%), Made in Korea 이미지 활용(31.3%), 현지 공급리스크 발생(25.0%), 현지 규제강화(25.0%), 우리 정부 유턴기업 인센티브(12.5%), 전문지식 및 지식재산권 유출 방지(7.3%) • 정책수요: 조세 감면 확대(32.5%), 보조금 지원 확대(26.0%), 공장 이전비용 지원(19.0%), 노동규제 완화(15.5%), 유턴기업 선정요건 완화(4.0%), 입지 및 환경규제 완화(각 1.5%)

주: 1. 산업통상자원부(‘17.9.)에서의 국내복귀 고려요인별 응답비중은 미제공. 산업통상자원부(‘20.3.)에서의 국내복귀 고려요인은 복수응답 포함

2. 중소기업중앙회(‘17.9.)에서의 국내복귀 고려요인의 경우 복수응답 포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리쇼어링’ 관련 의견 조사 결과보고서(2020.6.)」를 바탕으로 제작됨

일본 자동차기업과 한국의 국내복귀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신산업 성장을 위한 산업구조 전반의 첨단화와 고부가가치화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 국내복귀대책에서는 스마트공장 및 로봇 보급지원, 국가 R&D사업 참여우대 등 기업·사업장 단위 정책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첨단산업화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의 경우 단일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첨단산업화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과 국내복귀대책 간의 연계를 통해 기업복귀 성과의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산업기술혁신계획」 등 산업기술 관련 정책, 국내복귀기업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임을 감안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 등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정책, 「지역산업진흥계획」 등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복귀가 대다수임을 고려한 지자체의 산업발

전 관련 정책 등과의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적 차원에서는, 국내복귀기업 대상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하는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국내복귀의향기업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첨단산업화 지원, 지자체 산업발전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수집·전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첨단산업화·고부가가치화와 국내복귀 간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기업복귀 성과 향상 도모

첨단산업화·고부가가치화 지원 강화를 통한 국내복귀 성과 향상은 단일 정책만으로는 한계
□ 일례로, 국내복귀대책에서의 첨단산업화 지원의 경우, 스마트공장 및 로봇 보급지원, 국가R&D사업 참여우대 등 기업·사업장 단위 정책 위주로 집행



- 「산업기술혁신계획」 등 산업기술 관련 정책
- 국내복귀기업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므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등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향상 관련 정책
- 지역(수도권 외)으로의 복귀가 대다수이므로, 「지역산업진흥계획」 등 지자체 산업발전 관련 정책 등



국내복귀기업 대상 실무를 지원하는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서,
□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추진하는 첨단산업화·고부가가치화 지원 정책, 지자체 산업발전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계정보 수집 및 전달기능 강화 등에 대한 검토 필요

현행 국내복귀요건을 해외유사사례를 감안하여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해외사업장 축소보다는 국내투자 및 고용확대에 보다 초점을 맞추도록 개편하여, 국내복귀에 따른 파급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복귀를 위해 필요한 정책 중 수위(首位)의 응답률을 보인 정책은 세제 및 보조금 지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실태조사에서는 세제 감면이 35.7%로 가장 높은 정책수요를 보였으며 입지·설비보조금 지원이 두 번째로 높은 12.3%를 차지하였다. 2020년 3월 실태조사 시에도 투자(입지·설비)보조금 지원이 3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세제 지원(20.7%)이 두 번째로 높았다.

또한, 2020년 6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서도 조세 감면 확대가 32.5%로 가장 높았으며, 보조금 지원 확대가 26.0%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면, 법인세 및 관세 지원 등 지원실적 규모는 크지 않은 실정이다. 이들 실태조사 결과와 지원실적을 고려할 때, 해외진출기업들의 국내복귀를 위해서는 세제 및 보조금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⁵⁴⁾

[국내복귀 고려요인 중 세제 및 보조금 지원 관련 응답]

구분	조세 및 보조금 지원 관련 응답	
산업통상 자원부	☐ [2017.9.조사] • 국내복귀 고려요인 : 인센티브 등 • 정책수요 : 세제감면(35.7%), 입지·설비보조금(12.3%) 등	☐ [2020.3.조사] • 국내복귀 고려요인 : 복귀 인센티브(45.5%) 등 • 정책수요 : 투자보조금 지원(35.6%), 세제지원(20.7%) 등
중소기업 중앙회	• 국내복귀 고려요인 : 우리 정부 유턴기업 인센티브(12.5%) 등 • 정책수요 : 조세 감면 확대(32.5%), 보조금 지원 확대(26.0%) 등	

자료: 각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54) 참고로, 법인세 인화와 기업의 국내복귀·유치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법인세 인화가 기업의 국내복귀·유치를 촉진한다고 볼 수만은 없다.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법인세율과 해외직접투자」, 조세재정브리프 제95호, 2020.6.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주요 실태조사에서, 기업이 국내복귀를 위한 주요 정책수요로 세제지원을 들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복귀유도를 위한 주요 정책방향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이다.

한편,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은 국내복귀기업 인정범위 확대 등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형태로 개선이 되거나 진행중에 있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주요 개정 사유(인정요건 완화 관련)]

구분	주요 개정 사유
2019년 12월 10일 일부개정 (‘20.3.11.시행)	□ 현행법은 이 법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해외진출기업을 제조업에 한정하고 있는 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유도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는바, 이 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외 진출기업의 범위를 확대 (이하 생략)
2020년 12월 22일 일부개정 (‘21.6.23.시행)	□ (중략) 선정요건의 엄격성 ,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인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에 여전히 한계를 나타낸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해외진출기업으로서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완화 (이하 생략)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 이유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은 지원요건 완화는 국내복귀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국내복귀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20.3.11.시행)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따른 ‘국내복귀’는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증설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국내복귀기업’이란 국내복귀를 통해 신·증설 사업장을 보유하거나 국내복귀 진행 중인 기업을 의미한다.⁵⁵⁾

5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2019.12.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내복귀”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4.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 가.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 나.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따라서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의 수혜대상은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한 기업에 해당한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의 제정(13.8.)시, 해외 현지 사업장의 복잡한 청산·양도·축소 절차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시에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축소를 정책대상으로 설정한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세제 감면 및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 초기 운영시에는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던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유 및 국내복귀 정의]

구분	주요 내용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13.8.) 이유	❑ FTA 체결 확대 및 해외 현지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수요가 증가 ❑ 국내복귀를 위한 해외 현지 사업장의 청산·양도·축소 절차가 복잡하고, 국내복귀 시 국내법에 따른 관세부과 및 국내사업장 입지확보의 어려움 등을 겪는 상황 ❑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등 국내복귀를 하는 경우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 및 정착 촉진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따른 국내복귀 정의(제2조) ('20.3.11.시행)	❑ “국내복귀”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증설하는 것

주: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따른 ‘국내복귀’ 정의의 경우, 2020년 12월 10일(21.6.23.시행예정) 일부 개정법률에서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경우’,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확대예정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4년 이래로 2020년 9월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 수가 84개로 연평균 12개 수준이며 대기업은 1개에 불과한 등 여전히 국내복귀정책의 성과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해외진출기업이 청산·양도·축소와 같이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는 엄격한 기준을 완화하여, 기업들의 국내복귀 진입장벽을 낮추고 국내투자 및 고용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외 주요국에서의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⁵⁶⁾, 미국의 경우 해외 - 국내사업장 간 생산량 조정(전환), 해외 OEM이나 수입품의 기능을 대체하는 새로운 상품 생산, 해외투자계획의 취소 및 국내투자로의 전환 등까지 국내복귀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EU의 경우에도, EU회원국인 본국으로 이전, 비EU국가에서 EU회원국으로 이전 등을 모두 국내복귀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2020년 코로나19 추경과정에서 공급망 위험 품목의 국내투자촉진을 위해 국내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인데, 이 때 개별기업의 해외사업장 축소 및 동일제품 생산 등의 요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⁷⁾

[국내복귀 인정기준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유사 사례]

국가	국내복귀 인정기준
한국	□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증설
미국	□ 해외 - 국내사업장 간 생산량 조정(전환), 해외 OEM이나 수입품의 기능을 대체하는 새로운 상품 생산, 해외투자계획의 취소 및 국내투자로의 전환 등을 모두 국내복귀에 포함
EU	□ EU회원국인 본국으로 이전, 비EU국가에서 EU회원국으로 이전 등
일본	□ 국내투자촉진보조금 지급 관련 해외사업 축소 및 동일제품 생산 등의 요건 없음

주: OEM은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Manufacturer)의 약어로, 주문자의 의뢰에 따라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상품을 제작하는 것 혹은 제작하는 업체를 의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각 국가별 정책목적과 지원제도 간에 차이가 존재하여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에 비해 국내복귀 인정기준을 폭넓게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수도 많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각 국가별 기준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수는 미국의 경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109건이었으며, EU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50개로 보고된 바 있다.⁵⁸⁾

56) 국내복귀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 간에 법·제도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국가 간 직접적인 비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57)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하였다.

58)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하였다. 참고로,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우리나라의 국내복귀기업수는 84개이며, 각 국가별 정책목적 및 지원제도 등의 차이로 인해 단순비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축소 요건 등 국내복귀 인정기준을 엄밀하게 설정하여 국내복귀지원을 위한 예산지원과 조세감면이 보다 투명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해외공급망을 활용한 기존의 생산·조달체계 상의 안정성이 약화되면서, 해외 각국에서는 자국우선주의 측면에서 국내복귀 강화를 천명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보다 폭넓게 국내복귀를 인정함으로써 국내복귀유인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바이든 당선자는 국내복귀 관련 징벌적 과세 및 인센티브 제공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산 제품 우선구매 및 미국에서의 생산에 방점을 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국기업이 해외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및 서비스를 미국 자국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오프쇼어링세금(Offshoring Tax Penalty) 10%를 부과하고, 미국기업의 해외자회사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을 10.5%에서 21%로 2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징벌적 과세와, 해외생산시설의 미국이전 기업에 대한 1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미국 바이든 당선자의 국내복귀 관련 주요 공약내용]

구분	주요 내용
기조	[미국 중심 공급망 구축] • ‘미국산 제품 우선구매(Buy American)’ 강화 •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생산(Made in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 등
징벌적 과세	• 미국기업이 해외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서비스를 미국 자국에서 판매하는 경우, 오프쇼어링세금(Offshoring Tax Penalty) 10% 부과 • 미국기업의 해외자회사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을 10.5%→21%로 인상
인센티브	• 해외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미국 내 생산(Made in America)’ 기업 대상 10% 세액공제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2020.11.을 바탕으로 재작성

국내복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내 투자·고용 확대에 있음을 고려할 때,

①우리나라에서도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조정하지 않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 해외사업장-국내사업장 간 생산량 조정 등 **‘실제로 국내에서 새롭게 생산이 이루어지거나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국내복귀’도 정책적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해외생산량 감축요건 폐지에 따른 해외생산 감축량 대비 비례적 조세감면과 상시고용인원 요건 폐지는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위한 긍정적인 정책적 변화로 볼 수 있다.⁵⁹⁾⁶⁰⁾

②다만, 해외생산량 감축요건 폐지 후에 ‘해외사업장 감축량에 비례’하여 조세를 감면하는 정책으로 변경될 예정인데, 이 또한 해외감축량보다는 **‘국내에서의 투자 및 고용규모 확대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9) 관련 사례 중 하나로, 2014년부터 2020년 9월간 국내복귀 대기업은 2019년에 울산으로 복귀한 현대모비스 1개사였으나, 해외생산량 50% 감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인세 감면을 받지 못하였으며, 상시고용 20인 이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2020국정감사 이슈 분석 V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8.)

60) 참고로,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18.11.)」에서는 지방으로 복귀한 41개 국내복귀기업 중 투자보조금 수령 기업은 총 20개였으나, 투자계획 미이행으로 보조금이 환수된 기업이 총 7개이며 환수 규모는 55억 1,600만원이었다고 기술한 바 있다. (자료: 관계부처 합동,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2018.11.)

가. 국내복귀기업 투자 및 고용계획 현황

(1) 국내복귀기업 투자계획

국내복귀기업의 총 투자계획은 1조 2,477억원 규모이며, 업종별 기업당 투자계획 규모는 자동차 기업이 가장 높았고, 기업규모별 기업당 투자계획 규모는 대·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10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0년 9월 기준으로 국내복귀기업 84개의 투자계획 규모는 1조 2,477억원 규모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된 바 있다. 이를 국내복귀기업당 평균 투자계획 규모로 환산하면, 148억 5,000만원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국내복귀 자동차 기업(12개)의 투자계획 총액이 4,416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금속 기업(8개) 2,073억원, 화학 기업(6개) 1,895억원, 기계 기업(7개) 1,189억원, 전자(17개) 1,034억원 순으로 높은 투자계획 총액 규모를 보였다. 총 투자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은 신발·주얼리·섬유 기업으로, 신발 기업 500억원(8개), 주얼리 기업 365억원(13개), 섬유 기업 256억원(5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국내복귀기업당 투자계획 규모를 살펴보면, 자동차 기업 368억원/개, 화학 기업 315억 8,000만원/개, 금속 기업 259억 1,000만원/개, 기계 기업 169억 9,000만원/개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대·중견기업의 총 투자계획 규모가 7,822억원이며, 중소기업 4,655억원 규모를 보였다. 기업당 투자계획 규모로 환산해보면, 대·중견기업의 기업당 평균 투자계획은 651억 8,000만원으로, 중소기업의 기업당 평균 투자계획인 64억 7,000만원의 약 10배 수준(907.4%)으로 나타났다.

[국내복귀기업의 규모별·업종별 투자 계획]

(단위: 개, 억원)

구분		자동차			금속			기계			화학			전자		
		개사	총액	평균	개사	총액	평균	개사	총액	평균	개사	총액	평균	개사	총액	평균
투자 계획	대중견	4	3,879	969.8	2	1,950	975.0	-	-	-	3	1,655	551.7	2	326	163.0
	중소	8	537	67.1	6	123	20.5	7	1,189	169.9	3	240	80.0	15	708	47.2
	소계	12	4,416	368.0	8	2,073	259.1	7	1,189	169.9	6	1,895	315.8	17	1,034	60.8
구분		신발			주얼리			섬유			기타			합계		
		개사	총액	평균	개사	총액	평균	개사	총액	평균	개사	총액	평균	개사	총액	평균
투자 계획	대중견	-	-	-	-	-	-	1	12	12.0	-	-	-	12	7,822	651.8
	중소	8	500	62.5	13	365	28.1	4	244	61.0	8	749	93.6	72	4,655	64.7
	소계	8	500	62.5	13	365	28.1	5	256	51.2	8	749	93.6	84	12,477	148.5

주: 각 산업별·기업별 투자계획 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국내복귀기업 고용계획

국내복귀기업의 총 고용계획은 3,242명 규모이며, 업종별 총 고용계획 규모는 주얼리 기업이 가장 많았고, 기업당 고용계획은 기계 기업이 가장 높았으며, 기업규모별 기업당 고용계획 규모는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0년 9월 기준으로 국내복귀기업 84개의 고용계획 규모는 3,242명으로 제출되었다. 이를 국내복귀기업당 평균 고용계획 규모로 환산하면, 39명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국내복귀 주얼리 기업(13개)의 고용계획 총원이 554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자 기업(17개) 551명, 기계 기업(7개) 440명, 신발 기업(8개) 425명 순으로 높은 고용계획 총원 규모를 보였다. 이외에도, 자동차 기업(12개) 376명, 금속 기업(8개) 301명, 섬유 기업(5개) 223명, 화학(6개) 174명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국내복귀기업당 고용계획 규모의 경우, 기계 기업 63명/개, 신발 기업 53명/개, 섬유 기업 45명/개, 주얼리 기업 43명/개로, 전체 기업당 고용계획 규모 평균인 39명을 상회하였다. 한편, 금속(38명/개)·전자(32명/개)·자동차(31명/개)·화학(29명/개) 기업의 경우, 전체 국내복귀기업당 고용계획규모 평균을 하회하였다.

기업규모별 고용계획을 살펴보면, 대·중견기업의 총 고용계획 규모는 451명이며, 중소기업은 2,791명 규모를 보였다. 기업당 고용계획 규모로 환산해보면, 대·중견기업의 기업당 평균 고용계획 인원은 38명으로, 중소기업의 기업당 평균 고용계획 인원인 39명보다 낮았으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내복귀기업의 규모별·업종별 고용 계획]

(단위: 개, 명)

구분		자동차			금속			기계			화학			전자		
		개사	인원	평균	개사	인원	평균	개사	인원	평균	개사	인원	평균	개사	인원	평균
고용 계 획	대중견	4	80	20	2	120	60	-	-	-	3	94	31	2	150	75
	중소	8	296	37	6	181	30	7	440	63	3	80	27	15	401	27
	소계	12	376	31	8	301	38	7	440	63	6	174	29	17	551	32
구분		신발			주얼리			섬유			기타			합계		
		개사	인원	평균	개사	인원	평균	개사	인원	평균	개사	인원	평균	개사	인원	평균
고용 계 획	대중견	-	-	-	-	-	-	1	7	7	-	-	-	12	451	38
	중소	8	425	53	13	554	43	4	216	54	8	198	25	72	2,791	39
	소계	8	425	53	13	554	43	5	223	45	8	198	25	84	3,242	39

주: 1. 평균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인원수임

2. 각 산업별·기업별 투자계획 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나. 국내복귀정책의 명확한 성과목표 설정·관리 필요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 이래로 국내복귀 관련 주요 정책에서 명확한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국내복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내 투자 및 고용의 양적·질적 향상을 중심으로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외진출복귀법」은 2013년 8월 제정되었으며 동년 12월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00대 국정과제(‘17.8.)」,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18.11.)」, 「2020년 경제정책방향(‘19.12.)」,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6.)」, 「소재·부품·장비 2.0전략(‘20.7.)」, 「2021년 경제정책방향(‘20.12.)」 등 다양한 정책에서 국내복귀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왔다.

그러나 이상의 국내복귀정책에서 명확한 중장기 성과목표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또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4년부터 「해외진출복귀법」이 본격 시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6년간 국내복귀정책이 명확한 성과목표의 설정 하에 수립·시행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2019년 12월 발표된 「2020년 경제정책방향(19.12.)」에서 2020년에 22개 이상, 누적 90개 이상 국내복귀라는 목표를 포함하였으나, 사실상 2020년 단일 목표이며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에 따른 중장기 목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로 복귀하여 조업중·준비중인 기업이 64개이며 이전에 명확히 설정된 성과목표가 없었음을 감안할 때, 2020년 목표를 20여개 수준으로 설정할 경우 누적 90개가 달성가능하므로, 사실상 2020년 단일연도 목표가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내복귀기업 수로 성과목표를 설정할 경우에는 자칫 한계기업 유입의 우려도 존재하므로, 국내복귀기업 수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투자 및 고용 확대에 역행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2019년 국정과제별 보고서⁶¹⁾를 살펴보면, 2019년 주요 성과로 2019년 대기업 1개사 유지와 자동차부품기업 집단유턴 등 성공적인 사례를 창출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을 뿐, 기대효과인 유턴기업 일자리 창출 진행상황에 대한 언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대효과 달성에 대한 추진경과 또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투자·고용계획에 대한 성과목표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국내복귀기업 84개(2014~2020.9.)의 총 투자계획 규모는 1조 2,477억원 수준이며 총 고용계획 규모는 3,242명으로 집계된 바 있는데, 투자·고용계획 관련 성과관리 지표와 관리방안도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국내복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내 투자 및 고용의 양적·질적 향상 중심으로 성과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동 목표에 따라 관련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

성과목표의 체계적 설정을 위해서는 해외진출기업의 주요 업종·규모 등 고유 특성, 해외진출요인, 국내복귀 및 미복귀 의향·사유, 정책수요 및 건의사항, 국내복귀신청 후 미선정 및 지원배제 사유, 폐업·철회사유⁶²⁾, 한계기업 대상 여부 등의

61)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evaluation.go.kr/psec/np/np_2_1_2.jsp)에 수록된 국정과제 38번 관련 ‘국정과제별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하였다.

실태를 종합적·선제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실태조사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실태조사 절차·방법이 설정되어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의 정책 환류방안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속적·체계적·일관적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구조와 문항을 개발하고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를 통해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복귀기업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 조세감면, 입지지원 등 다양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보공개 시 경영상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를 점검하고 해당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태조사 시 관련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통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관련 통계를 DB화하여 실태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이와 같은 자료의 중장기적 축적이 이루어지는 경우, 비용편익분석 등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개발·개선의 기초자료로도 활용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피드백 제공, 시사점 발굴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⁶³⁾ 더불어, 해외진출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내복귀 프로그램을 맞춤형⁶⁴⁾으로 제공하고 지자체의 국내복귀 관련 정보접근성을 확대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⁶⁵⁾, 국내복귀정책의 성과를 관리하는데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 확대의 경우에는 국내복귀정책 중 하나인 스마트공장 지원 등 시설 고도화 지원과 상충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양적인 고용 확대 방안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공급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62)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수는 총 102개였으며, 철회 및 폐업 비중은 17.6%(18개)로 나타났다.

63) 2020년 12월 22일 일부개정되었으며 2021년 6월 23일 시행예정인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9조(실태조사) 제5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64)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해외직접투자통계’ 웹페이지를 운영중에 있는데, 이를 참고하여 국내복귀기업·해외진출기업 대상 실태조사 결과 및 관련 통계를 수록하는 DB 구축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65) 대만의 경우, 대만 전기전자협회, 대만 경제부 투자사무처 등에서 해외진출 자국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다수 실시하여 맞춤형 지원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으며, 이는 대만의 주요 국내복귀 성과창출 요인으로 설명하는 사례도 있다.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리쇼어링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2018.12)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에서 제시한 목표, 기대효과 및 실적]

국내복귀 관련 정책		정책별 제시 목표 및 기대효과
前	100대 국정과제 (‘17.8.)	• 목표 설정여부: 미설정 • 기대효과: ’22년까지 유턴기업 일자리 1천개(직접고용, 누계)창출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18.11./ 발표문)	• 목표 설정여부: 미설정 • 기대효과: ’22년까지 약 100개의 유턴기업이 국내로 들어와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後	2020년 경제정책방향 (‘19.12.)	• 목표: 유턴기업 실적(20년)을 역대 최고수준인 22개 이상 (누적 90개 이상) 창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6.)	• 목표/기대효과 설정여부: 미설정
	소재·부품·장비 2.0전략 (‘20.7.)	• 목표/기대효과 설정여부: 미설정

+

주요 실적
[2014년~2020년 9월 누적 기준] • 총 국내복귀기업 수(철회·폐업 제외): 84개 ※ 20(‘14)→3(‘15)→12(‘16)→4(‘17)→9(‘18)→16(‘19)→20(‘20.9.) • 실제 투자유치규모: 알 수 없음 ※ 투자계획(84개 기업 제출 기준. 기업별 목표기간 자료 미공개): 1조 2,477억원 • 실제 일자리창출 수: 알 수 없음 ※ 고용계획(84개 기업 제출 기준. 기업별 목표기간 자료 미공개): 3,242명

↓

명확한 성과목표 미설정으로 인한 성과목표 달성여부 불투명 → 효율적 예산집행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가능

↓

실태조사의 체계적 설계 및 결과 반영을 통한 국내복귀정책 성과목표 설정 필요 • 실태조사 구조와 문항 개발을 통한 지속적·체계적·일관적 실태조사 진행 •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를 통해 자료 축적 및 통계DB 구축

↓

국내복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내 투자 및 고용의 양적·질적 향상을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동 목표에 따라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필요 • 목표기간까지의 국내복귀기업 규모(수·투자액 등) 유치목표, 일자리창출 수 등 포함 고려 ※ 단, 고용 확대의 경우에는 스마트공장 지원 등 시설고도화 지원과 상충 가능성 → 양적인 고용 확대 방안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공급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도 병행될 필요

주: 前/後는 관계부처 합동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18.11.)」 발표를 기준으로 함

자료: 각 정책 및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계획기간별로 투입계획규모가 100조원 이상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서의 지역별 주력산업과 국내복귀기업 입지 간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 이를 위해 국내복귀기업 선정과정에서의 지자체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⁶⁶⁾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5년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19년 12월 현재 제4차 계획까지 수립되어 있다.⁶⁷⁾ 동 5개년계획에서의 재원투입 규모(계획)는 제1차 계획에서는 132조원이었으며, 제2차 계획에서는 161조원, 제3차에서는 165조원, 제4차에서는 175조원 이상으로 증가세를 보여왔다.⁶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차수별 재원투입 계획

(단위: 조원)

구분	제1차 계획 (‘04~‘08)	제2차 계획 (‘09~‘13)	제3차 계획 (‘14~‘18)	제4차 계획 (‘18~‘22)
재원투입규모	132	161	165	175+ α

주: 1. 제4차 계획에서의 α 는 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신속 추진되는 사업의 투자계획 규모임

2. 2018년은 제3차 계획과 제4차 계획이 중첩되는 기간임. 제3차 계획에서의 2018년 재원투입 계획은 32.1조원이었으며, 제4차 계획에서의 2018년 재원투입계획은 26.9조원이었음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 2019.1.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서는 지역주도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산업 ↔ 일 자리 ↔ 인재 선순환구축 등을 목적으로 14개 시·도별 주력산업 등을 선정하여 왔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본격 시행된 2014년부터의 지역별 주력산업은 제3차 계획인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2018)」 및 제4차 계획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에서 제시한 바 있다.⁶⁹⁾

6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하 "국가균형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67)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① 「국가균형발전계획」(2004. 1. 16. 제정~2008. 3. 28. 타법개정) → ② 「지역발전 5개년계획」(2009. 4. 22. 일부개정~2017. 10. 31. 일부개정) → ③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 3. 20. 일부개정~현재)로 명칭이 변경되어 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각 계획기간에 따른 계획명칭으로 기술하였다.

68)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 2019.1.

「제3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 및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따른
14개 시·도별 주력산업 및 주요 국내복귀산업 비교

구분	14개 시·도별 주력산업				지역별 국내복귀산업
	제3차 지역발전 5개년 계획 (2014~2018)(63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2018~2022)(48개)		
전북	- 기계부품 - 건강기능식품 - 해양설비기자재	- 경량소재성형 - 복합소재섬유	- 농생명소제식품 - 지능형기계부품	- 해양설비기자재 - 탄소·복합소재	기계(1), 섬유(2), 전자(2), 주얼리(12), 화학(1)
부산	- 지능형생산기계 - 조정밀융합부품 - 금형열처리	- 바이오헬스 - 디지털콘텐츠	- 바이오메디컬 - 지능형기계부품	- 지능정보서비스 - 클린에너지	금속(2), 기계(2), 신발(8), 기타(1)
경북	- 모바일 - 디지털기기부품 - 에너지부품	- 성형가공 - 기능성바이오소재	- 바이오뷰티 - 기능성섬유	- 지능형디지털기기 - 하이테크성형가공	금속(1), 기계(1), 섬유(1), 자동차(4), 전자(2), 화학(2)
충남	- 자동차부품 - 인쇄전자부품 - 동물식의약	- 디지털영상콘텐츠 - 디스플레이	- 바이오식품 - 친환경자동차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금속(2), 기계(1), 자동차(2), 전자(2), 기타(1)
경남	- 지능형생산기계 - 기계소재부품 - 항공	- 풍력부품 - 항노화바이오	- 항노화바이오 - 지능형기계	- 나노융합부품 - 항공	금속(1), 자동차(1), 전자(1), 화학(1), 기타(1)
세종	- 자동차부품 - 바이오소재		정밀의료	첨단수송 기기부품	기계(1), 전자(1), 기타(1)
대구	- 정밀성형 - 스마트분산형에너지 - 소재기반바이오헬스	- 의료기기 - 스마트지식서비스	- 의료헬스케어 -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	섬유(1), 자동차(1)
광주	- 스마트가전 - 생체의료용소재부품	- 복합금형 - 디자인 - 조정밀공작기계	- 디지털생체의료 - 광융합	- 복합금형 - 스마트가전	자동차(1), 전자(1)
울산	- 자동차 - 정밀화학 - 조선기자재	- 에너지부품 - 환경	- 친환경자동차부품 - 조선해양	- 첨단화학신소재 - 친환경에너지	자동차(1), 화학(1)
충북	- 반도체 - 바이오의약 - 전기전자부품	- 태양광 - 동력기반기계부품	- 바이오헬스 -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전자(1), 기타(1)
전남	- 금속소재·가공 - 석유화학기반 고분자소재	- 바이오식품 - 에너지설비	- 바이오헬스 케어소재 - 첨단운송기기부품	- 에너지신산업 - 청색·청정환경	섬유(1)
강원	- 웰니스식품 - 구조용신소재 - 스포츠지식서비스		- 웰니스식품 -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 지식서비스	화학(1)
대전	- 무선통신융합 - 메디바이오 - 로봇자동화	- 지식재산서비스 - 금속가공	- 바이오 기능성소재 -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	복귀기업 없음
제주	- 물융합 - 관광디지털콘텐츠	- 웰니스식품 - 풍력·전기차서비스	- 청정헬스푸드 -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복귀기업 없음

주: 1. 괄호안의 숫자는 지역별·산업별 국내복귀기업 수를 의미

2. 본 표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의 주력산업은 2018~2020년 기준임

자료: 지역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의 「제3차 지역발전 5개년 계획(2014~2018)」(14.12),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19.1.) 및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 69) 주력산업은 지역의 산업기반과 성장성 등 미래의 산업발전가능성을 기초로, 고용창출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산업을 의미한다. (자료: 지역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지역발전 5개년 계획(2014~2018)」, 201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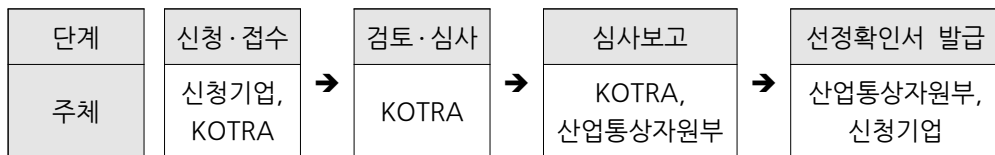
한편, 「제3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2018)」 및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 따른 14개 시·도별 주력산업과 지역별 국내복귀산업 간에 강한 매칭 경향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⁷⁰⁾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각 차수별로 10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계획이다. 또한, 주력산업이 지역산업기반, 성장가능성 및 고용창출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복귀기업이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서 지역별 주력산업으로 선정된 산업들과 연계될 경우 시너지효과 창출가능성이 높다.

지역별 주력산업과 국내복귀기업 간 연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국내복귀기업 선정과정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는 국내복귀기업 선정절차 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KOTRA, 신청기업이 주체가 되고 있다.

[국내복귀기업 선정절차 주요 단계 및 주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zip - 유턴기업 Summary Guide」, 2020.11.를 바탕으로 재작성

즉, 법령 및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국내복귀가 사실상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집중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복귀기업 선정절차 상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나, 사실상 선정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체적·적극적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⁷¹⁾ 국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국내복귀 관련 조사에서 지역특수성 고려, 국내복귀기업 관련 현황 및 투자정보 확대 관련 응답이 존

70) 참고로, 전북의 경우 국내복귀 주얼리기업 중 대부분이 입지하여 있으며, 주얼리 산업은 제3차 계획에서 선정한 전북지역의 연고산업에 해당하므로, 전북지역 주력산업과는 연관성이 낮으나 연고산업과는 연관되어 있다.

71) 다만, 지자체는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후 투자보조금·이전보조금 신청을 받으며, 국내복귀기업과 지자체 간 MOU 체결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때, 주력산업 등에 대해서는 특정업종 가산비율을 2%p 적용받을 수 있다. 「2021년 경제정책방향(20.12)」에서는 해당 가산비율을 5%p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제하였음을 감안하면, 지자체가 국내복귀기업 선정 및 지원 등 정책 전반에서 입지가 확고하지 못한 상태임을 방증한다.

[국내 지자체의 국내복귀 관련 정책요구사항]

구분	주요 내용
국내 지자체	• 비수도권 지역에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수도권 지원(첨단산업 한정) 강화 대응 등 •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준 완화: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완화 등 •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인센티브 지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대우, 경기북부지역의 비수도권 수준 지원, 보조금 차등 지급 등 •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정보공유: 해외진출기업 현황 및 유턴투자 동향 관련 정보 등

자료: 국회입법조사처의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020.10.)」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1년 6월 23일 시행예정(2020.12.10.일부개정)인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1항에서는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참여범위·협의방식·절차 등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방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국내복귀기업 선정 및 지원과정, 국내복귀정책과 지자체 발전정책 간의 연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개선과 역할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자체의 재량권 확대를 통해 자체적인 국내복귀기업 유치역량 강화로의 점진적인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⁷²⁾

72) 미국과 일본 등 해외유사사례를 살펴보면, 중앙(연방)정부는 규제완화, 세제개편 등 정책적 측면에서 국내복귀를 지원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세제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을 실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향후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외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지자체의 재량권을 강화하고 독자적인 지원이 추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각 국가별로 지자체의 재정부담능력이 상이하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등의 측면에서 재정여력에 차이가 존재하여 자칫 지역별로 편향적인 복귀가 이루어질 소지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외사례의 일률적인 적용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정책은 2013년 8월 제정된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근거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2018년 11월 발표된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에서는 기존 대책을 통한 국내복귀성과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국내복귀기업 인정범위 확대, 인센티브 강화, 지원체계 간소화 및 유치활동 강화 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포함되었다. 이후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일부개정(‘19.12.) 및 시행(‘20.3.)이 이루어졌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공급망 약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6.)」, 「소재·부품·장비 2.0전략(‘20.7.)」, 「2021년 경제정책방향(‘20.12.)」 등을 통해 국내복귀 확대를 위한 정책이 추가로 발표되었다. 2020년 12월에는 국내복귀기업 범위 확대, 입지 관련 사용특례 마련 등을 위한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21년 6월 23일 시행예정이다.

한편,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의 제·개정을 통해 국내복귀기업 지원의 법적 토대가 구축되었으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이 발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직접투자에 비해 국내복귀 실적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2014년부터 2020년 9월 까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해외에 설립된 신규법인 수는 연평균 3,201개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의 연평균 국내복귀기업 수는 12개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현황 및 실태를 점검·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복귀기업 관련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내복귀기업 84개 중 대기업은 1개에 불과하나 동반복귀 측면에서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국내복귀성과 확대를 위해 대기업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2019년 1개 대기업 복귀 시 5개 기업이 동반복귀한 사례가 존재한다. 또한, 해외진출 시 원청업체의 협력업체로 진출하여 (단독으로) 국내복귀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라는 해외진출기업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동반복귀 측면에서 대기업의 국내복귀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국내복

귀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으므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에서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기업 관련 국내복귀정책 검토 시에 중소·중견기업 지원과의 공정성 측면 등에서 특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지원과의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동반복귀 및 투자·고용(계획) 규모 및 달성가능성,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동반복귀에 따른 지원혜택을 조율하는 등 세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내복귀와 첨단산업·고부가가치화로의 산업 패러다임 변화 간의 관련성을 감안할 때, 국내복귀 지원정책과 첨단산업화·고부가가치화 정책 간에 밀접한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시장진출, 생산비용 감소를 목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 국내복귀 유인이 높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최근 실태조사에서 숙련노동, 신산업성장,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등 첨단산업화·고부가가치화와 관련된 응답이 존재하였음을 고려할 때,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첨단산업화·고부가가치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자국복귀의 경우, 친환경차 개발 등 차세대 자동차로의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전환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한편, 첨단산업화·고부가가치화의 경우 단일 정책만으로 한계가 존재하므로, 정부의 산업기술 관련 정책,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정책, 지자체의 산업발전 관련 정책 등과의 연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국내복귀기업 대상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유관 정책 정보수집·전달기능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국내복귀요건을 해외유사사례를 감안하여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해외사업장 축소보다는 국내투자 및 고용확대에 보다 초점을 맞추도록 개편하여 국내복귀에 따른 파급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직간접적인 재정지출이 국내복귀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축소 요건 등 국내복귀 인정기준을 엄밀하게 설정하여 국내복귀지원을 위한 예산지원과 조세감면이 보다 투명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 이후 7년여간 국내복귀기업이 84개로 성과가 한정적이며, 코로나-19로 인해 미국·EU·일본 등 주요국들이 국내

복귀 강화를 천명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많은 우수한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EU·일본 등 해외유사사례를 살펴보면, 국내복귀기업 인정요건으로 해외사업장 축소기준을 포함하지 않거나, 해외투자계획 취소 및 국내투자로의 전환 등도 국내복귀로 인정하는 등 우리나라에 비해 국내복귀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국내복귀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내 투자·고용 확대에 있음을 고려할 때, 실제로 국내에서 새롭게 생산이 이루어지거나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국내복귀를 인정하고, 해외사업장 축소보다는 국내에서의 투자 및 고용규모 확대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국내복귀정책 수립·시행 시 국내복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내투자 및 고용의 양적·질적 향상을 중심으로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할 필요가 있다.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시행된 이후 국내복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발표되었으나 명확한 성과목표가 설정되지 않아, 국내복귀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 이후 2020년 9월까지 국내복귀기업 84개의 투자계획은 1조원을 상회하고, 고용계획은 3천여명에 이르므로, 동 계획의 달성에 대해 성과관리 또한 필요한 실정이다. 성과목표의 체계적 설정·관리를 위해 종합적·지속적·일관적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구조와 문항을 개발하고 국내복귀기업 대상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를 통해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통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관련 통계의 DB화가 요구된다. 이는 국내복귀 프로그램의 맞춤형 제공, 지자체의 국내복귀 정보 접근성 확대 및 성과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서의 지역별 주력산업과 국내복귀기업 입지 간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 이를 위해 국내복귀기업 선정과정에서의 지자체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서는 산업 - 일자리 - 인재 선순환 구축을 목적으로 14개 시·도별 주력산업 등을 선정하여 왔으나, 동 5개년계획에서의 주력산업과 국내복귀기업 입지 간에 강한 연계경향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계획기간별로 10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법정계획이므로, 국내복귀정책과 연계가 강화될 경우 시너지효과 창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복귀기업 선정절차 상에서의 주된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

KOTRA임을 감안할 때, 지역발전계획과 국내복귀기업 간의 연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국내복귀기업 선정과정부터 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개선과 역할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다.

[국내복귀기업 관련 정책에 대한 주요 분석결과 및 개선방안]

구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대기업 복귀 활성화	□ 대기업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방향 검토 필요 •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국내복귀기업 84개 중 대기업은 1개에 불과 • 1개 대기업 복귀 시 5개 기업 동반복귀 • 해외진출 시 원청업체의 협력사로 진출하여 단독으로 국내복귀하기는 어려운 실정 • 전체 국내복귀기업 투자계획 규모, 해외진출 신규법인수당 투자금액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대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복귀정책은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수립·시행 →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에서의 강화를 고려할 필요
첨단산업화· 고부가 가치화 지원 강화	□ 국내복귀와 첨단산업으로의 산업 패러다임 변화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국내복귀 지원 정책과 첨단산업화 정책 간에 밀접한 연계 필요 • 현지시장진출, 생산비용 감소를 목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 국내복귀유인이 높지 않을 수 있음 • 국내복귀 주요 고려요인 및 정책수요로 숙련노동, 신산업 성장,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등 첨단산업화 지원 관련 응답 존재 • 첨단산업화의 경우 단일 정책만으로는 한계 존재 → 정부의 산업기술 관련 정책,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정책, 지자체의 산업발전 관련 정책 등과의 연계 필요 → 실무적 측면에서,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유관 정책에 대한 정보 수집·전달기능 강화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
인정 요건 완화	□ 현행 국내복귀요건을 해외유사사례를 감안하여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해외사업장 축소보다는 국내투자 및 고용확대에 보다 초점을 맞추도록 개편하여, 국내복귀에 따른 파급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 •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 이후 7년여간 국내복귀기업이 84개로 성과가 한정적.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주요국들이 국내복귀를 강화하는 추세 → 보다 많은 우수기업들의 국내복귀를 위한 진입장벽 완화방안 검토 필요 • 해외 주요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내복귀 인정요건인 해외사업장의 축소요건 보다는 국내복귀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복귀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 • ‘실제로 국내에서 새롭게 생산이 이루어지거나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국내복귀를 인정’ 및 해외사업장 축소보다는 ‘국내에서의 투자 및 고용규모 확대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갈 필요

구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성과 관리 강화	□ 국내복귀정책 수립·시행 시 국내복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내투자 및 고용의 양적·질적 향상을 중심으로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할 필요 • 국내복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발표되었으나 명확한 성과목표가 설정되지 않아, 국내복귀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 국내복귀기업 84개의 투자계획은 1조원을 상회하고, 고용계획은 3천여명에 이르므로, 동 계획의 달성여부에 대한 성과관리가 필요한 실정 - 실태조사 구조 및 문항 개발, 국내복귀기업 대상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를 통한 자료 축적, 국내복귀기업 관련 통계의 DB화 필요 - 이는 국내복귀 프로그램의 맞춤형 제공, 지자체의 국내복귀 정보 접근성 확대 및 성과관리에도 유용하게 활용 가능
지자체 역할 강화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서의 지역별 주력산업과 국내복귀기업 입지 간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 이를 위해 국내복귀기업 선정과정에서의 지자체 역할 확대 필요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서는 산업-일자리-인재 선순환 구축을 목적으로 시·도별 주력산업 등을 선정. 그러나 동 5개년계획에서의 주력산업과 국내복귀기업 입지 간에 강한 연계경향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계획기간별로 10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법정계획이므로, 국내복귀정책과의 연계가 강화될 경우 시너지효과 창출 가능 • 국내복귀기업 선정절차 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KOTRA가 주된 주체 → 지자체가 국내복귀기업 선정과정부터 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개선 및 역할 강화 도모 필요

국내복귀기업 관련 정책은 2012년(「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방안('12.4.)」)부터 추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13년 12월부터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시행되면서 법적 기반이 갖추어졌으나, 5년간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업 수가 51개에 그치는 등 그간의 실질적인 정책성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⁷³⁾

또한, 기업의 해외진출목적 중 현지시장 진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⁷⁴⁾하고 있어 국내복귀 유도에 한계를 보였으며, 국내복귀기업 인정범위 및 보조금 지급요건 등과 관련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업의 해외진출목적 및 국내복귀제도 관련 기업 지적사항]

구분	주요 내용
기업 해외진출목적	• 현지시장 진출(71%), 수출촉진(13%), 저임활용(7%) 등
기업 지적사항	• 국내복귀기업 인정범위 협소 (제조업, 해외사업장 청산 중심) • 까다로운 보조금 지급요건, 빈번한 환수사례 • 국내사업실적이 없어 자금대출 어려움 • 인센티브 신청 시 서류·절차 부담 과중

자료: 관계부처 합동,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2018.11.

73)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 이후 5년 간 국내복귀기업 51개가 선정되어 성과가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언급한 바 있다. (자료: 관계부처 합동,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2018.11.29.)

74) 참고로,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의 기존 해외진출국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미국이었다.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이들 6개국으로 진출한 목적을 살펴보면, 현지시장진출(72.3%), 수출촉진(11.1%), 저임활용(7.8%)이 전체 진출목적의 90%를 상회하고 있어,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18.11.)」에서의 해외진출목적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따라,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유턴기업 유치’⁷⁵⁾를 포함하였고, 2018년 11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18.11.29)」을 발표하면서, 국내 복귀기업 지원체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⁷⁶⁾

동 대책을 통해, ①해외사업장 축소요건·업종제품 확대 등 국내복귀기업 인정 범위 확장, ②보조금지급·조세감면·입지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 ③절차·서류·기한 등 지원체계 간소화, ④해외진출기업 D/B구축 및 국내복귀 수요발굴 등 유치활동 강화 등과 같이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현장 애로사항 해소에 주력함으로써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국내복귀기업 인정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해외생산량 축소 요건을 기존의 ‘해외생산량 50% 이상 축소’에서 ‘해외생산량의 25% 이상’ 축소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지식서비스업’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이전기업 지원과의 균형을 추구하려는 취지였다. 더불어, 생산제품의 범위도 기존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외사업장 생산제품과 동일한 세분류(4단위)’를 국내복귀 시 생산할 경우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하였으나, 이를 ‘소분류(3단위)’로 완화하여 국내복귀기업 생산제품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인센티브 강화와 관련해서는, 투자보조금(입지·설비)을 지원받기 위한 요건으로 국내사업장 상시고용요건인 ‘30인 이상’을 충족시켜야 하였으나, 이를 국내 중소기업(5인 이상 제조업) 평균고용인원(18명)을 감안하여 ‘2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보조금 지급 시 담보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보험증권 외에 은행권 지급보증서(현금예치 없는 담보상품활용) 등 담보제출 수단을 다변화하였으며, 대기업의 경우에도 중소·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투자보조금 지급대상에 새롭게 포함하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고용창출장려금에 대해서도 기존의 신청기간을 국내복귀기업

75) 100대 국정과제 중 38번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의 세부실천과제로 ‘유턴기업 유치’가 포함되었다. (자료: 대한민국 정부, 「100대 국정과제」, 2017.8.)

76)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18.11.29)」에서 제시한 개선내용들이 대책 발표 즉시 적용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①업종을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업 포함까지 확대, 국·공유지 사용특례 신설, 지원제도 신청 절차 및 기한 간소화 등은 2019년 12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일부개정을 통해 변경되었다. 또한, ②생산제품 범위 확대(세분류→소분류)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개정(19.8.)에서, ③해외사업장 축소요건 완화(50→25%)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규칙」 개정(19.8.) 등을 통해 추진되었다. ④입지설비·보조금, 고용창출보조금은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⑤법인세·관세 등 조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18.12.)을 통해, ⑥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19.2.)을 통해 기존 정책들이 변경·시행되었다.

선정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지원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하였다. 법인세·관세 감면 대상도 기존의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하였으며,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감면⁷⁷⁾도 허용하고자 하였다. 입지 지원 인센티브의 경우, 기존에 국가·지자체가 산업단지를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한데서, 국·공유재산 수의 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100%)과 함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휴·폐업 공장부지 매입 후 리모델링을 통해 조성하는 임대공장에 국내 복귀기업의 우선입주 지원을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초기 시설투자 자금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등 정부 정책사업 참여를 우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외에도, KOTRA ‘원스톱 지원데스크’ 구축을 통한 지원절차 및 서류 간소화, 신청기한 관련 제도 간소화, 해외진출기업 D/B 구축 및 유턴 수요발굴·제도홍보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77) 기존의 경우, 국내복귀기업은 법인세·관세 등 조세 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액의 20%가 다시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었다. 한편,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이전기업은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이전기업과 성격이 유사한 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도록 개선하고자 하였다. (자료: 관계부처 합동,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2018.11.29.)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정책과제별 주요 개선 발표내용]

정책과제	주요 내용	기존	개선																	
유턴기업 인정범위 확대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완화	• 해외사업장 50% 이상 축소	• 25% 이상 축소로 완화																	
	대상업종 확대	• 제조업만 지원	• 지식서비스업 추가																	
	생산제품 범위 확대	• 표준산업분류 상 해외와 동일한 세분류 (4단위)제품 국내생산시 유턴 인정	• 표준산업분류 세분류(4단위) → 소분류(3단위)로 완화																	
인센티브 강화	입지·설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 타당성평가 60점 이상 ※ 고용계획 과다계상 우려	• 20인 이상으로 하향 • 타당성평가 기준 보완																	
	입지·설비보조금 담보부담 완화	• 보증보험증권 발급기관 1개로 보조금 수령기업 불편 • 高보증료+현금예치 요구	• 담보수단 다양화 ※ 예시 : 현금예치 요구 없는 지급보증서 발급(산업은행)																	
	입지·설비보조금 지급대상 완화	<table><tr><th colspan="2">대기업</th><th colspan="2">중견·중소기업</th></tr><tr><th>청산·양도</th><th>축소</th><th>청산·양도</th><th>축소</th></tr><tr><td>X→○</td><td>X→○</td><td>○</td><td>X→○</td></tr></table>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청산·양도	축소	청산·양도	축소	X→○	X→○	○	X→○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청산·양도	축소	청산·양도	축소																
	X→○	X→○	○	X→○																
	고용보조금 지원기간 확대	• 선정일로부터 2년 내 신청 • 지원기간 : 1년	• 선정일로부터 3년 내 신청 • 지원기간 : 2년																	
	법인세·관세 감면대상 확대	• 청산·양도/축소 후 복귀 : 5년/3년간 100%+2년간 50% 감면 • 관세 감면한도 폐지	<table><tr><th colspan="2">대기업</th><th colspan="2">중소·중견기업</th></tr><tr><th>청산·양도</th><th>축소</th><th>청산·양도</th><th>축소</th></tr><tr><td>법인세</td><td>○</td><td>X→○</td><td>○</td><td>○</td></tr><tr><td>관 세</td><td>X→○</td><td>X→○</td><td>○</td><td>○</td></tr></table>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청산·양도	축소	청산·양도	축소	법인세	○	X→○	○	○	관 세	X→○	X→○	○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청산·양도	축소	청산·양도	축소																	
법인세	○	X→○	○	○																
관 세	X→○	X→○	○	○																
농어촌특별세 감면	• 외투, 지방이전만 감면 • 유턴기업은 법인세·관세 등 감면 시, 감면액의 20%를 다시 농특세로 납부	• 유턴기업도 감면																		
입지지원 강화	• 산업단지 입주 우선	• 국·공유지 사용 특례, 임대공장 지원 등 추가																		
국가정책사업 참여 우대	-	• 유턴기업 우선 지원 (정책자금, 스마트공장 등)																		
지원절차 간소화	지원절차 및 서류 간소화	• 각 지원제도 개별신청·개별심사 (코트라, 지자체, 고용센터 등)	• 신청·심사 일원화 (코트라 원스톱 지원데스크) • 제출서류 축소(68→29개)																	
	신청기한 간소화	• 입지·설비·고용보조금 신청시11개 기한 준수 필요	• 3개 기한 폐지 • 3개 기한 연장																	
유턴기업 유치활동 강화		• 해외진출기업 D/B 구축 및 정비(KOTRA-수은 협업) • 유턴 수요발굴 및 제도개편 홍보 등																		



유턴기업 유치를 통해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주: 1. ‘입지·설비보조금’은 투자보조금을, ‘고용보조금’은 고용창출장려금을 의미
 2. ‘입지·설비보조금 지급대상 완화’, ‘법인세·관세 감면대상 확대’에서, 화살표는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발표 (前)→(後)를 지칭. X는 정책대상아님, ○는 정책대상포함을 의미
 자료: 관계부처 합동,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발표, 2018.11.

「해외진출기업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3년 8월 6일 제정(‘13.12.7. 시행)되었다. 이후 2019년 12월 10일 일부개정되어 2020년 3월 11일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의 주된 제정(‘13.8.) 이유로는, FTA 확대 및 해외 현지 경영환경 악화 등의 요인으로 국내복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복귀를 위한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축소 절차가 복잡하고 국내복귀 시 국내법에 따른 관세 부과 및 국내사업장 입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겪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함이었다. 이를 위해,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등 국내복귀를 하는 경우 지원대상 선정을 통해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 등 각종 지원을 진행함으로써, 원활한 국내복귀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한편, 2019년 12월 이루어진 일부개정의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범위를 제조업으로 한정하는 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유도에 한계가 존재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로 이루어졌다.⁷⁸⁾ 동 개정에서는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18.11.)」에서 제시된 주요 개선방향 등을 포함한 국내복귀기업 관련 법적 근거의 보강이 이루어졌으며, 국내복귀기업 대상업종 확대,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신설 및 센터 운영, 국공유재산 사용특례 등이 포함되었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 개정내용 및 기존내용 비교
해외진출기업 (제2조제1호나목)	개정	나. 기업 자신 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정보통신업 및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하고 있을 것
	기존	(중략)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하고 있을 것

78)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하였다.

구분		주요 개정내용 및 기존내용 비교
사업장 (제2조제2호)	개정	• 제1호나목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시설 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기존	• (중략)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이나 시험생산시설 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국내복귀 (제2조제3호)	개정	•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 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
	기존	• (중략)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 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
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	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국내복귀기업 지원 시행계획 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이하 항목 생략)
	기존	• (중략)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 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제6조)	개정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를 둔(이하 항목 생략)
	기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중략)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함(이하 항목 생략)
자금지원 (제12조제2항)	개정	• (중략) 국가 및 지자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공장의 매입·임대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기존	• (중략) 토지매입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국유·공유재산의 임대 (제13조의2)	개정 (신설)	• (중략)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국내복귀기업에 사용·수익 또는 대부 가능 등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감면 등 (제13조의3)	개정 (신설)	• (중략) 국가 소유 토지등을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가능 등(이하 항목 생략)
국유·공유재산의 매각 (제13조의4)	개정 (신설)	• 국가등이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등을 수의계약으로 국내복귀기업에 매각 가능 등(이하 항목 생략)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설치 (제17조제4항)	개정 (신설)	•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는 (중략) 지원에 필요한 신청서류 접수, 처리기관 이송 등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에 관한 민원사무 처리 가능

주: 1. 기존은 2013년 8월 제정(12월 시행)된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을, 개정은 2019년 12월 일부개정(2020년 3월 시행된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을 의미

2. 굵은 글씨는 '기존'과 '개정'에서의 주요 비교부분을 표기한 것임

3. 국유·공유재산 관련,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설치 관련 조항은 신설되어 '기존' 부분 미작성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외진출기업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16805호, '19.12.10. 일부개정)을 바탕으로 재작성

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6.) 및 소재·부품·장비 2.0전략('20.7.)

최근 발표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6.)」, 「소재·부품·장비 2.0전략('20.7.)」 등의 대책에서도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경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종합하면, 세제 측면에서는, ①국내사업장 증설을 통한 복귀 시에도 감면혜택 제공, ②해외생산 감축량 요건(50%) 폐지 및 생산 감축량에 비례한 감면 실시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재정지원의 경우, ③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신설⁷⁹⁾ 및 보조금 사용용도 통합(입지·설비·이전비용) 지원, ④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지원비율·한도 상향(100 → 300억원) 및 수도권 지원(첨단산업 한정, 150억원), ⑤스마트공장 및 로봇보급사업 지원 강화(3 → 7+α억원) 등의 강화책을 담았다.

제도개선 측면에서는, ⑦사업장 축소기준에 연구개발비를 포함하는 등 연구개발(R&D)센터 복귀요건을 마련하고, ①최소 상시고용요건을 20인 이상에서 폐지하며, ②고용인원·투자규모 등에 따른 지급비율을 차등화한다. 또한, ③국내복귀기업 신청기한(해외사업장 축소완료일로부터 1 → 2년) 및 ④국내사업장 신설·증설 기한

79) 신설된 국내복귀기업 보조금은 ‘국내복귀투자보조’ 내역사업 예산으로 집행된다. 참고로, 국내복귀기업 관련 재정사업으로 ‘투자유치기반조성’ 사업(세부사업)이 있다.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국내복귀기업지원’ 내역사업과 ‘국내복귀투자보조’ 내역사업이 있다.

- ① ‘국내복귀기업지원’ 내역사업은 2013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투자를 유치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운영비용 등을 목적으로 편성되었다. 동 내역사업의 2021년 예산은 전년대비 29.0% 가량 증액된 17억 8,000만원이며, 제도운영비 8억 6,000만원, 유치활동비 5억 6,000만원 및 유턴보조운영비 3억 6,000만원으로 구성된다.
- ② ‘국내복귀투자보조’ 내역사업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부터 투자 및 이전비용 보조를 통해 국내복귀 투자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편성되었다. 동 내역사업의 2021년 예산은 전년대비 150% 증액된 500억원이며, 5개 기업 266억 6,700만원의 30% (80억원) 및 12개 기업 600억원의 70% (420억원)로 구성된다.

[투자유치기반조성 사업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본예산	추경	
국내복귀기업지원	729	729	729	729	300	300	300	1,380	1,380	1,780
국내복귀투자보조	-	-	-	-	-	-	-	-	20,000	50,0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각 연도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선정일로부터 3 → 5년)을 완화한다. 이외에도, ㉞지방외투지역 내 국내복귀기업 입주 허용 및 항만배후단지·산단입주 규제 완화, ㉟중소·중견 국내복귀기업 대상 화학안전제도 컨설팅 및 융자금 우선지원 등을 포함한다.

인력 측면에서는, ㉑해외사업장 외국인근로자 국내채용을 위한 E-9비자⁸⁰⁾ 지정알선 예외허용, ㉒외국인 우수연구인력 유치를 위한 소득세 감면허용 등의 개선책이 담겼으며, 금융 측면에서는 ㉓국내복귀기업 시설·투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충, ㉔1,000억원 규모 신뢰성 보증, ㉕수요기업 협력사 국내복귀장려 등이 도입된다.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6.)」에서의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지원방향〕

• 국내복귀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종합 패키지 도입		
세 제	국내사업장 증설을 통한 복귀 시에도 세제지원 적용	
	현행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또는 축소·유지 후 국내사업장 신설·창업시 세제지원
	개선	국내사업장 증설의 경우, 증설로 인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세제지원
	해외사업장 감축률 요건 폐지 및 감축 수준에 따른 감면한도 설정 등	
	현행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 감축시에만 법인세·소득세 감면
	개선	해외생산 감축량 요건 폐지 및 생산 감축량에 비례하여 감면
입 지	-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공장총량 범위내 우선배정 -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준 완화(매출 중 수출입액 30 → 20%) - 국내복귀기업 산단 입주시 분양·임대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산단입지구제 완화 등	
보조금	국내 소지역 대상으로 국내복귀기업 입지시설 투자 및 이전비용 등을 지원하는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신설 등(2020년 제3회 추경)	
	현행	기업당 100억원(투자보조금을 통해 지원)
	개선	사업장당 비수도권 200억원, 수도권(첨단산업 한정) 150억원
설 비	- 국내복귀기업의 제품 고부가가치화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및 로봇 보급사업 지원 강화 등(2020년 제3회 추경) - 스마트공장 우선 선정, 로봇보급사업 지원한도 확대(3 → 5억원) 등	
금 융	국내복귀기업 대상 시설·설비투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충 등	
R&D	산업기술R&D 사업 참여 국내복귀기업 우대지원 등	
인 력	해외사업장 근로자를 국내에서 채용 가능하도록 E-9 지정알선 예외 허용 등	
컨설팅	국내복귀에 필요한 컨설팅 경비 지원 상향(최대 1 → 2만불)	
	국내 조세제도에 대한 전담 정보제공 창구 운영 등	
규 제	중소·중견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신속한 화학안전제도 이행을 위한 밀착형 컨설팅 및 융자금 우선 지원 등	

80)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에 따른 외국인 취업활동 체류자격 중 하나로, 동 시행령 [별표 1의2]에서는 E-9(비전문취업) 체류자격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으로 정의하고 있다.

• 첨단산업 중심으로 R&D센터 유치 전략 마련					
기준 완화	- 연구개발비를 반영해 사업장 축소기준 다양화 등 - 연구개발 관련 평가 등 기준 다양화				
	<table><tr><td>현행</td><td>제조거점 생산량 기준으로 국내복귀기업을 인정해 R&D센터 포함 어려움</td></tr><tr><td>개선</td><td>연구개발비 또는 연구개발직 인원기반 평가 등 기준 다양화</td></tr></table> 대형 R&D센터 국내복귀 촉진을 위해 규모에 따라 차등화(총 연구개발비 규모 등 감안)	현행	제조거점 생산량 기준으로 국내복귀기업을 인정해 R&D센터 포함 어려움	개선	연구개발비 또는 연구개발직 인원기반 평가 등 기준 다양화
	현행	제조거점 생산량 기준으로 국내복귀기업을 인정해 R&D센터 포함 어려움			
	개선	연구개발비 또는 연구개발직 인원기반 평가 등 기준 다양화			
<table><tr><td>현행</td><td>과거 1년 생산량의 25% 이상 축소(단일 기준)</td></tr><tr><td>개선</td><td>총 연구개발비 규모를 감안하여 20%(100억원 이하), 15%(100~1,000억원), 10%(1,000억원)으로 차등화</td></tr></table>	현행	과거 1년 생산량의 25% 이상 축소(단일 기준)	개선	총 연구개발비 규모를 감안하여 20%(100억원 이하), 15%(100~1,000억원), 10%(1,000억원)으로 차등화	
현행	과거 1년 생산량의 25% 이상 축소(단일 기준)				
개선	총 연구개발비 규모를 감안하여 20%(100억원 이하), 15%(100~1,000억원), 10%(1,000억원)으로 차등화				
세제	외국인 우수연구인력 국내 유입 지원을 위해 일정 경력요건 등 충족 시 소득세 감면				
보조금	- 해외 첨단기업 및 R&D센터 유치를 위해 외투기업 현금지원 한도 및 국고보조율 상향 등 - 현금지원한도 : R&D센터 40%/기타 30% → R&D센터 50%/첨단산업 40% - 국비보조율 : 수도권 3 : 7/비수도권 6 : 4 → R&D센터, 첨단산업의 경우 10%p 상향				
인센티브	복수 R&D센터 국내복귀 시 공동 지원센터 설립·운영, 정부 R&D사업에서 가점 부여 등 우대 지원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0.6.을 바탕으로 재작성

「소재·부품·장비 2.0전략(‘20.7.)」에서의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지원방향

• 전략적 국내복귀 지원 확대 등 투자유치 인센티브	
세제지원	- 투자세액공제 개편시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첨단분야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 대폭 강화 - 지원대상 확대, 요건완화, 공제율 우대, 이월공제기간 연장 등
재정지원	- 첨단산업 유치·국내복귀지원에 소요되는 보조금, 외국교육기관 유치, 인프라 구축 등에 향후 5년간 약 1.5조원 규모 재정지원(국비·지방비 포함) - 첨단산업, R&D센터, 소부장 투자시 현금보조율 및 국비매칭비율 10%p 상향 - 국내복귀보조금 신설, 사용용도(임지·설비) 통합, 이전비용,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비율 및 한도 상향(100 → 300억원) 등
시장확보	- 수요기업 협력사 국내복귀지원(물량보장, 자금 및 기술지원 등) 장려 및 제도적 지원(동반성장 평가(중기부) 및 공정거래협력 평가(공정위) 가점 부여 등) - 해외인증지원사업, 구매조건부R&D, 수출바우처지원사업 등 우대(중기부, 산업부)
비용부담 완화	공정혁신R&D, 스마트설비 우대금리(1.8%p 하향) 적용, 스마트공장 + 로봇패키지 지원한도 확대(최대 5 → 7억원+ α)
제도개선	- 최소 상시고용요건 완화: 현재 20인 이상 → 폐지 - 고용인원·투자규모 등에 따른 지급비율 차등화 - 국내복귀기업 신청기한 완화: 해외사업장 축소 완료일로부터 1 → 2년 - 국내사업장 신·증설 기한 완화: 선정일로부터 3 → 5년 - 지방 외투지역 내 국내복귀기업 입주 허용 등
투자협력	- 국내투자 중심으로 공급망 생태계 협력구조 정착을 위해 기업간·업종간 컨센서스 플랫폼 (Sector Deal)* 가동. 이 때, 정부는 조정·중재자 역할 (수요기업) 국내기술제품 우선 채택, 기술로드맵 공유 / (공급기업) 안정적 품질·납품 보장
신뢰성 보증	수요기업의 수리대체 및 리콜비용 보전, 사업장 중단손해 등 구매리스크 경감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신뢰성 보증 도입

자료: 관계부처 합동 「소재·부품·장비 2.0전략(‘20.7.9.)」을 바탕으로 재작성

상기 국내복귀 대책 이행을 위한 법적 후속조치로,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이루어졌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의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주요 개정 내용				
R&D센터 등 연구시설 유턴 가능	- 연구인력 증원 등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증설 변경 신고를 통해 국내사업장 신·증설 인정 가능(시행령 제3조) -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으로 ‘경상연구개발비’ 신설* 및 해외 연구시설 규모에 따른 해외사업장 축소 비율 차등화(시행규칙 제3조) * 경상연구개발비 규모(해외사업장 축소 비율): 0~50억원(25%이상), 50~100억원(20%이상), 100~1,000억원(15%이상), 1,000억원 이상(10%이상)				
유턴기업 인정요건 완화	- 해외-국내 생산제품·서비스 동일성 요건 완화(시행령 제3조 등) <table border="1"> <tr> <td>기존</td><td>해외 - 국내 생산제품·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3단위)상 일치</td></tr> <tr> <td>개정</td><td>소분류가 다르더라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소재·부품·공정 등의 유사성 등을 심의하여 동일성 인정 가능</td></tr> </table> -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를 ‘매출액’, ‘경상연구개발비’,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의 생산량’으로 다양화하여 기업의 해외사업장 축소 관련 입증 부담 완화	기존	해외 - 국내 생산제품·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3단위)상 일치	개정	소분류가 다르더라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소재·부품·공정 등의 유사성 등을 심의하여 동일성 인정 가능
기존	해외 - 국내 생산제품·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3단위)상 일치				
개정	소분류가 다르더라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소재·부품·공정 등의 유사성 등을 심의하여 동일성 인정 가능				
보조금 확대	- 자금지원 대상지역을 비수도권(기존)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개정)으로 확대(시행령 제11조) - 단, 수도권의 경우 첨단업종(「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 및 제품 등)에 한정하여, 수도권에도 보조금 지급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연구개발센터 등에 대한 국내복귀 지원 강화-개정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20.11.9.)」을 바탕으로 재구성

이와 같이,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관련 정책은 국내복귀기업 인정 범위 확대 및 요건 완화, 세제 감면, 보조금 지급 확대 및 신설, 입지·인력 관련 지원 강화 등과 같이 규제 강도가 완화되고 인센티브가 강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나. 2021년 경제정책방향('20.12.)

2020년 12월 17일 발표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내복귀기업 중심으로 지원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크게 첨단산업 등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합리화, 협력형 국내복귀 지원(성공사례 창출), 전략적 유치 필요성에 따른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국유지 임대료 추가 감면 검토, 스마트화 및 공정자동화 지원 확대,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부여 및 우선입주 허용 등이다.

해당 정책은 2021년 상반기(6월)까지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내복귀보조금 고시, 「항만법」 시행령 및 시행지침 개정 등을 통해 적용될 계획이다.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의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지원정책]

구분	주요 내용
지원제도 합리화	• [인정요건] 해외사업장 축소기준 25% → 예외 인정, 동일제품생산 기준 예외 인정(소분류 → 예외 인정) • [보조금] 첨단산업, 지역주력산업 등에 대한 지원비율에 2%p가산 → 5%p 가산으로 확대(2021년 6월까지 적용 예정)
협력형 국내복귀 지원	• 2개 이상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동반복귀 시, 국내복귀기업 인정요건 완화 및 보조금 지원비율 상향
전략적 유치를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 전략적 유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별협상을 통해 현행 지원 수준 이상의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 투자·고용증대 효과, 국내 공급망 상에서의 중요도 등을 고려 KOTRA 국내복귀지원센터에서 잠정 후보 선정 → 국내복귀기업 지원위원회 의결로 선정
국유지 임대료 추가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과 유사하게 투자규모·고용효과 등에 따라 추가로 국유지 임대료 감면 검토
스마트화 및 공정 자동화 지원 확대	• 공정혁신을 위해 국내복귀기업당 최대 11억원까지 지원 확대 (기존 9억원 → 11억원) • 산업, 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유턴 전략 품목' 30개 발굴 및 R&D 사업 등 집중 지원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부여 및 우선입주 허용	•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수출입액 비중과 관계없이 입주자격 부여 및 우선입주 허용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1년 경제정책방향」, 2020.12.를 바탕으로 제작성

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일부개정 및 공포(‘20.12.)

2020년 12월 22일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일부개정되었으며, 2021년 6월 23일 시행예정이다.⁸¹⁾ 주요 개정사항으로 크게 대상확대, 인정요건 완화, 협력형 유턴 지원근거 마련, 지원강화,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였다.

①대상확대의 경우, 기존의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에서 방역·면역 산업이 추가하였다. ②인정요건의 경우, 첨단업종에 해당하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또는 축소 요건을 면제하였다. ③협력형 유턴의 경우, 국내복귀기업이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경우 우선·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지원강화 측면에서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제도 수립·운용, 연구개발비용 지원, 시장개척 및 거래처 확보, 입지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였다. ⑤사후관리 측면에서는, 국내복귀기업의 해외·국내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주요 개정사항(20.12.22 개정 기준)]

구분	주요 개정내용	개정 법 조항
대상확대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 → 방역·면역 산업 추가	제2조제1호나목
인정요건	• 첨단업종·핵심 공급망 품목은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면제 등	제2조제3호나목
협력형 유턴	• 협력형 유턴(수요기업과 협력 공급사가 연계하여 복귀) 규정 및 우선·추가지원 근거 신설 - 거리적 인접성 요건 삭제, 공동시설 지원 등 인센티브 추가 등	제16조의2
지원강화	• R&D·시장개척·정주여건 개선 및 보증 지원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 제16조 등
사후관리	• 매년 실태조사 의무적 실시 등	제9조

주: 본 표에서의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일부개정(‘20.12.22)법률은 2021년 6월 23일 시행 예정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협력형 유턴 신설 등 개정 「유턴법」 공포」, 2020.12. 및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일부개정법률(‘20.12.22)을 바탕으로 재작성

81) 산업통상자원부, 「협력형 유턴」 신설 등 개정 「유턴법」 공포, 2020.12.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

발간일	2021년 5월
발행인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tel 02·2672·1535)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404-3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1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 9700486-001887-01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